

# 축산물 위생 관리 법령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

---

# 목 차

---

1. 축산물위생관리법령 .....	1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	106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116
4. 별지서식 .....	221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조 항	페이지	조 항	페이지	조 항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가축의 범위 등)	1	제1조의2(식용란)	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3	제5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3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4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4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4		
		제9조(분과위원회)	4		
		제9조의2(연구위원)	5		
		제10조(간사)	5		
		제11조(수당과 여비)	5		
		제12조(운영세칙)	5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5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5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6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6			제4조 삭제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7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가축의 도살 등)	7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8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8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9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9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10		
제8조(위생관리기준)	10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10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1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	11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12
				제7조의3(조사·평가의 방법 등)	14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16
				제7조의5(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16

			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18	
			제7조의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18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19	제12조의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범위)	19	제7조의8(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대한 감독)	19
제9조의3(지정 유효기간)	20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20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20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20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제4장 검사	20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20		
제11조(가축의 검사)	21	제13조(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 등)	21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21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1
제12조(축산물의 검사)	22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21
				제11조 삭제	
제12조의2(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24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22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22
제12조의3(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25	제13조의2(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25	제14조(영업자의 검사)	23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25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25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23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등)	26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24
제14조(검사원)	27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27	제17조(검사기록부)	24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27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24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27		
		제18조(검사원의 자격·임무)	27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5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29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26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31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30		
		제18조의4(수입축산물의 검사)	31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31
제15조의2(수입·판매 금지 등)	33	제18조의5(수입·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33	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32
제16조(합격표시)	34			제23조(합격표시)	34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34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34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34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34
제19조(출입·검사·수거)	35	제20조(축산물판매업의 범위)	35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35

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36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35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36
				제28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36
				제28조의2(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37
				제28조의3(보고 및 지도·감독 등)	38
				제28조의4(검사업무의 정지 등)	38
				제28조의5(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38
				제28조의6(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	39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40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 범위 등)	40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41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41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42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42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2
제22조(영업의 허가)	44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45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44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46
제24조(영업의 신고)	47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47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47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49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48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49
제26조(영업의 승계)	50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49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52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52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50
		제24조 삭제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50
제28조(과징금처분)	53	제25조(과징금의 금액기준)	53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0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4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52
제29조(건강진단)	54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52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53
제30조(위생교육 등)	55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54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5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0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55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	60	제26조의2(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	60	제47조(위생교육기관)	56
				제48조(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56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57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59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60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60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62	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51조의3(회수계획 및 절차 등)	60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64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62
제33조의2(위해 평가)	65	제26조의3(이해관계인의 범위)	66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64
		제26조의4(위해평가의 대상 등)	66		
제6장 감독 등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68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68
제35조(시설 개선)	68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68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69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감독 등)	69
제37조(공표)	70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70	제55조(압류증)	70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2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70
제38조(폐쇄조치)	73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73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2
제38조의2(감독)	74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73
제7장 보칙					
제39조(포상금)	74	제30조(포상금의 지급)	74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74
제40조(보조금)	75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75			제58조 삭제	
제41조(수수료)	76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76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76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77				
제43조(청문)	77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7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77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80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81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80				
제46조(양벌규정)	83				
제47조(과태료)	83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3		
부칙 <제10310호, 2010. 5. 25>	99	부칙 <제22497호, 10.11.19>	99	부칙 <제158호, 2010.11.26>	99

<p style="text-align: center;"><b>축산물위생관리법</b></p> <p>[일부개정 2010.5.25공포, 2010.11.26시행 법률 제10310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b></p> <p>[일부개정 2010.11.19공포, 2010.11.26시행 대통령령 제22497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b></p> <p>[일부개정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li> <li>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li> <li>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li> <li>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li> <li>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li> </ol>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가축의 범위 등)</b>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슴</li> <li>2. 토끼</li> <li>3. 칠면조</li> <li>4. 거위</li> <li>5. 메추리</li> <li>6. 꿩</li> <li>7. 당나귀</li> </ol>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牛脂)
5. 식용 돈지(豚脂)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조제유류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 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 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제5조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 있는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수산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1과 같다.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과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4.8.4>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

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 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상(負傷)
2. 난산(難産)
3. 산욕마비(産褥痲痺)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

**· 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역원장은 검사관·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9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그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기준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지정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역원장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조사·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여부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3. 감시활동,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4. 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 실험실 검사 실

⑥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 및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시 및 기록유지 여부

5. 교육훈련 수료 여부
  6.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7.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를 한 시·도지사 및 기준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6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5(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과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⑩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⑪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⑫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
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5.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0항 및 제13항제4호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소비자단체 또는 축산 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역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의 내용과 출입·조사의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제9조제1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포함한다)
2. 제9조제1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4. 축산물 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사업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기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말한다.

1. 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2. 제21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3.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제7조의8(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대한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원장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지정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닭의 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 제4장 검사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 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 및 그 식육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책임수의사가 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4.8.4>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책임수의사는 해당 가축 및 식육의 도살·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 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결과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등 그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

**제12조의3(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의2(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 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 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3.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5.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여부 확인
6.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7.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8. 영업장 시설의 검사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10.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
11.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2.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3.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14.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15.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②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축산물의 검사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 7.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 9.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검사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도축장 및 집유장을 말한다.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검사원의 자격·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해진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

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  
업무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  
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  
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  
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  
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  
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24시간 이상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전단에 따른 검사를 같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수입축산물의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완료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2.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으로서 수입신고인이 통관 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해당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 중 해당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만 해당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4에 따라 발급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검역원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⑦ 영 제18조의4제1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별표 7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 검역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축산물을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수분함량에 관한 것으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사를 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15조의2(수입·판매 금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8조의5(수입·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해당 보세구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검역원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유통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검역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수입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다.

**제20조(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이란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말한다.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①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이하 “축산물위생검사”라 한다)를 하는 기관(이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과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평가 및 검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국립축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

② 검역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③ 검역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2.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3.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검역원장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4. 검사 수수료
  5.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중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시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3(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 제27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의4(검사업무의 정지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고, 법 제20조제6항제6호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3과 같다.

**제28조의5(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매년 축산물위생검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 검사 업무정지기간에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6(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농업연수원
3. 그 밖에 검역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 관련 법규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3. 축산물위생검사의 방법
4.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6.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2.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

같다.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 4시간

2.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매년 21시간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힘이 있는 사람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점검·지도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표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지도
4. 법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축산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폐기
6. 그 밖에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등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지도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해촉·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압류·폐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 ④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

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 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해당한다)
3. 감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1. 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냉장실

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시설의 사용계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위생검사가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제26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유통기간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인감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24조 삭제 <2006.9.22>**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검역원장이 법 제20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징금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제25조(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물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건강진단)** ①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생교육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과 책임수의사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 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익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내용, 시기 및 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6.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

**제47조(위생교육기관)** ①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생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지정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가.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생교육기관은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개인 위생, 축산물 위생시책, 품질관리 등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

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다만,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는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4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3. 제46조제6호에 따른 종업원: 매년 4시간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



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4.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 ①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계획을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6조의2(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경우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③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제51조의3(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생산단위(롯데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3.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트)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 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원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4.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가축이 먹는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나 축산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7.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8. 각종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은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9.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법령에 따라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은 제외한다.
10.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11. “한방(韓方)”·“특수제법”·“주문쇄도”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1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표시·광고

1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5.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 ③ 법 제32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26조의4(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라.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나. 축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나. 위해평가는 검역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검역원장이 부담한다.
-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장 감독 등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시설 개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② 위해평가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로 보고할 수 있다.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축산물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축산물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회수·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감독 등)**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제37조(공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회수·압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⑤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보급된 해당 신문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28조·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전화번호 및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하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검사·조사, 폐기·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검역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기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의 실적 등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폐쇄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시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
2.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의2(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사무소, 검사 장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39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2. 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드는 비용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7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11.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제58조** 삭제 <'10.11.26>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기준원장이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성분규격 및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한시적 인정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에 관한 규격 등의 고시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의 고시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6.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

내야 한다.

- 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7.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등에 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8.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출입·조사
  9.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기준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0. 법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와 통보, 이의신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 중 검역원 소속 공무원의 검사관 임명
  1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신고수리·검사 및 국내외 검사기관의 인정
  13.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결과와 수출입 실적 등의 보고 및 검사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수거명령
  14.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지정을 포함한다), 지정취소 및 검사 업무의 정지명령
  15.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 지급과 이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고시
  16.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수리
  17.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18.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19.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계획·회수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2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2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및 위해 여부의 결정
23. 법 제34조에 따른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접수
24.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25.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회수 명령
26.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2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8.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2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감독
30.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31.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
3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3.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고시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제2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벌금에 관한 권한을 기준원장에게 위탁한다.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기준원의 임직원
2. 책임수의사
3.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

###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제2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표장을 한 자
  15.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당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영업장의 해충을 방제·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축산물의 제조·가공·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2. 별표 12 제1호나목·사목·아목, 제2호자목 또는 제4호나목·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별표 13 제1호라목·바목 또는 제3호가목·나목·파목·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표시를 허위로 하여 별표 13 제3호가목·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당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기준에 적당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5.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농림수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2.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5443호,1997.12.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

**부칙 <제15812호,1998.6.2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287호,1998.7.3>**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
- 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

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 (축산물가공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 (축산물운반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포장류 제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②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⑤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내지 ④ 생략

⑤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별표 8제2호 라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5765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315호,19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법시행규칙) <제1345호,1999.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략

**부칙(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부칙 <제6192호,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5호,2000.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58호,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호,2000.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2호,200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 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3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부칙 <제17652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4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축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

한다.

**부칙 <제1424호,2002.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동일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③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연구소

**부칙 <제1478호,200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 마목·아목·자목, 별표 13의 제3호 나목·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5호,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 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 ⑦및 ⑧생략

**부칙 <제19689호,2006.9.22>**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9호,2006.10.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및 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제25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과학원

②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5 및 제21조제8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제7조의3제3항·제4항·제6항, 제7조의6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39조 전단·후단, 제47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2호, 제5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제6호가목(4)·나목(1)(마), 별표 13 제3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8757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본문, 제26조의4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다목·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호, 제19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779호,2008.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59> 부터 <63> 까지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

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 칙 <제8852호,2008.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

### 부칙 <제28호,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

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균·소독제 및 탈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호,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카목(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부칙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제6항”은 “제30조제2항·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1802호, 09.11.2>**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7호, 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해당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차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거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8호서식(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판매업자 및 장소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 제6호나목(1)(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 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차목(4), 별표 13 제3호다목·차목·하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닭·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8조의6,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제60조, 별표 2의3(닭·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10(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식용란수집 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3(식용란 중 닭의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조(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4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명째부터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닭(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닭의 기준을 적용받는 가금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업무량은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26일부터 2012년 11월 25일까지는 3만수로 한다.

**제4조(영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II. 제4호나목·제8호나목·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6)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동안은 별표 10 제7호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축산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장대상 식육의 합격표시에 관하여 그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이 반영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별표 8 제1호 및 별도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식육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식육판매

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업(식육을 절단·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간은 별표 10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畜産物加工處理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保健環境研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5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畜産物加工處理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어린이 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아목(2)·(3) 및 제5호사목(2)·(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4) 단서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㉖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㉗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㉙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㉚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㉛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및 자체검사원·검사 보조원의 수 (제17조의2관련)	107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제19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5항관련)	109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제2항관련)	110
[별표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0조제1항관련)	112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32조제3항관련)	113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2 관련)**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2만수 이하
-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4만수 이하
-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6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2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 4) 같은 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 5)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책임수의사는 검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연간 90일 이내로 한정한다)에는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1명당 4만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준 업무량의 100분의 150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집유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의 수는 집유농가 500호당 1명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원의 수

구 분	가축별	일일 도축두수	검사원의 수
도축장	소	1두 ~ 30두	1명 이상
		31두 ~ 60두	2명 이상
		61두 이상	3명 이상
	돼지	1두 ~ 300두	1명 이상
		301두 ~ 700두	2명 이상
		701두 이상	3명 이상
	닭	1수 ~ 20,000수	1명 이상
		20,001 ~ 40,000수	2명 이상
		40,001수 이상	3명 이상
집 유 장		집유농가수	100호당 1인 이상

3. 그 밖의 기준

가.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하는 경우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

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나. 제2호에 따른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집유)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 작업장의 영업자는 검사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원해야 한다.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 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

2. 소각·매몰·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

- 가. 동물의 사체, 축산물 등 폐기대상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소각·매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나. 원유 등 액상물질에 대한 정화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라.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에 대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3개월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의 전부정지	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전부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		20 이하		5
2		20 초과 ~ 30 이하		8
3	10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100 이하	12
4	100 초과 ~ 20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

5	200 초과 ~ 31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28
6	310 초과 ~ 430 이하	150 초과 ~ 21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36
7	430 초과 ~ 560 이하	210 초과 ~ 27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44
8	560 초과 ~ 700 이하	270 초과 ~ 330 이하	500 초과 ~ 650 이하	52
9	700 초과 ~ 860 이하	330 초과 ~ 400 이하	650 초과 ~ 800 이하	60
10	860 초과 ~ 1,040 이하	400 초과 ~ 470 이하	800 초과 ~ 950 이하	68
11	1,040 초과 ~ 1,240 이하	470 초과 ~ 550 이하	950 초과 ~ 1,100 이하	76
12	1,240 초과 ~ 1,460 이하	550 초과 ~ 650 이하	1,100 초과 ~ 1,300 이하	82
13	1,460 초과 ~ 1,710 이하	650 초과 ~ 750 이하	1,300 초과 ~ 1,500 이하	88
14	1,710 초과 ~ 2,000 이하	750 초과 ~ 850 이하	1,500 초과 ~ 1,700 이하	94
15	2,000 초과 ~ 2,300 이하	850 초과 ~ 1,000 이하	1,700 초과 ~ 2,000 이하	100
16	2,300 초과 ~ 2,600 이하	1,000 초과 ~ 1,200 이하	2,000 초과 ~ 2,300 이하	106
17	2,600 초과 ~ 3,000 이하	1,200 초과 ~ 1,500 이하	2,300 초과 ~ 2,700 이하	112
18	3,000 초과 ~ 3,400 이하	1,500 초과 ~ 2,000 이하	2,700 초과 ~ 3,100 이하	118
19	3,400 초과 ~ 3,800 이하	2,000 초과 ~ 2,500 이하	3,100 초과 ~ 3,600 이하	124
20	3,800 초과 ~ 4,300 이하	2,500 초과 ~ 3,000 이하	3,600 초과 ~ 4,100 이하	130
21	4,300 초과 ~ 4,800 이하	3,000 초과 ~ 4,000 이하	4,100 초과 ~ 4,700 이하	136
22	4,800 초과 ~ 5,400 이하	4,000 초과 ~ 5,000 이하	4,700 초과 ~ 5,300 이하	142
23	5,400 초과 ~ 6,000 이하	5,000 초과 ~ 6,500 이하	5,300 초과 ~ 6,000 이하	148
24	6,000 초과 ~ 6,700 이하	6,500 초과 ~ 8,000 이하	6,000 초과 ~ 6,700 이하	154
25	6,700 초과 ~ 7,500 이하	8,000 초과 ~ 10,000 이하	6,700 초과 ~ 7,400 이하	160
26	7,500 초과 ~ 8,600 이하	10,000 초과	7,400 초과 ~ 8,200 이하	166
27	8,600 초과 ~ 10,000 이하		8,200 초과 ~ 9,000 이하	172
28	10,000 초과 ~ 12,000 이하		9,000 초과 ~ 10,000 이하	178
29	12,000 초과 ~ 15,000 이하		10,000 초과 ~ 11,000 이하	184
30	15,000 초과 ~ 20,000 이하		11,000 초과 ~ 12,000 이하	190
31	20,000 초과 ~ 25,000 이하		12,000 초과 ~ 13,000 이하	196
32	25,000 초과 ~ 30,000 이하		13,000 초과 ~ 15,000 이하	202
33	30,000 초과 ~ 35,000 이하		15,000 초과 ~ 17,000 이하	208
34	35,000 초과 ~ 40,000 이하		17,000 초과 ~ 20,000 이하	214
35	40,000 초과		20,000 초과	220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20만원 이하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해당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30만원 이하
6.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만원 이하

비 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고발 또는 검거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I. 일반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 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II.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100
2.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3.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4.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
다. 그 밖의 영업자		300
5.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200
다. 그 밖의 영업자		50
6.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0
7.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법 제47조	500

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8.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가. 도축업의 영업자		300
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200
다.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200
라.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100
9.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20
10.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0
11.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7조 제2항제5호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13.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47조 제2항제6호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
2)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
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00
14. 법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로서	법 제47조 제2항제7호	



가.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
나.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
15.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20
16.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
17.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50
18.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19.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
20.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
21.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50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118
[별표2] 영업의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122
[별표2의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	125
[별표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126
[별표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127
[별표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	134
[별표4] 축산물의 검사기준	135
[별표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137
[별표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138
[별표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139
[별표8] 식육의 합격표시	143
[별표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145
[별표9의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 정지의 처분기준	146
[별표9의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149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151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	172
[별표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 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203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207
[별표1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	212
[별표14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	213
[별표14의3] 회수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기준	.....	214
[별표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	215
[별표15] 허가 등 수수료	.....	216
[별도1] 검인(포유류)	.....	217
[별도1의2]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등의 표면)	.....	217
[별도2] 검인(가금류)	.....	218
[별도4]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	219
[별도5]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	220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도살방법

- 1) 도살 전에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 2) 도살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sub>2</sub>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혈 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선은 스테인리스철재로서 소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방혈법
  - 가)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 나) 목동맥 절단 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 다) 방혈 시에는 뒷다리를 매달아 방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屠體)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 1) 가축의 껍질과 털은 해당 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2) 머리
  - 가) 소
    - (1) 뒷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한다.
    - (2) 머리부위에는 하악림프절인두후림프절 및 귀밑림프절을 부착시킨다.
  - 나) 양·돼지 등  
소의 방법에 따라 머리부위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다.
- 3) 앞다리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다만,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돼지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뒷다리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다만, 탕박을 하는 돼지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장기  
배 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 가) 절개 시에 음경·고환 및 유방(새끼를 낳은 소만 해당한다)을 제거한다.
- 나) 항문·외음부 및 그 주위 부분을 제거한 후 횡경막의 부착 부분부터 절개한다.
- 다) 가슴뼈와 치골결합 사이를 세로로 절개한다.
- 라) 장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항문을 묶는다.
- 마) 흉강장기·복강장기를 모두 꼬집어내고 도체에서 분리한다.
- 바)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채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
-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

## 6) 도체

다음 방법에 따라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가)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엉덩이사이뼈·허리뼈·등뼈 및 목뼈를 좌우 평등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의 도체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 사이가 일부 절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체를 4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제13등뼈) 사이를 절단하여야 한다.
- 다)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 가. 도살방법

- 1) 도살은 전살법, 자격법 또는 CO<sub>2</sub> 가스법을 이용한다.
- 2)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하며, 도체에 상처나 울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리방법

- 1) 가금의 처리는 충분히 방혈한 후 탕지(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탈모·머리절단·발절단·항문제거·개복·장기적출·냉각(수세냉각 또는 공기냉각)·냉장·냉동(냉동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장(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순서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탕지는 가금이 죽은 후에 하여야 하고, 탕지하는 물은 식육이 익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 3) 가금의 털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오리 등의 경우 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4) 가금의 절단작업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머리·발·기도·허파·식도·심장·모이주머니·내장 등을 제거하고, 해체된 식육은 더럽혀지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하며, 내장의 적출은 항문의 주위를 도려낸 후 실시하여야 한다.

5) 냉장·냉동(냉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포장(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해체된 식육을 신속히 냉각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가)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온도는 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부온도가 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빙수냉각

(1) 빙수냉각은 식용얼음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제빙기가 없는 도축장에서는 수냉각장치에 의한다.

(2) 식육은 다음에 규정된 시간 내에 5℃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 시까지 이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도 체 중 량	시 간
1.8kg 미만	4
1.8kg 이상~3.6kg 미만	6
3.6kg 이상	8

(3)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육은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탱크에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가) 보관기간 중에는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얼음을 보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척냉각수는 포장 시의 습기흡수율 및 수분함유율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냉동 또는 냉동포장을 하는 식육의 경우 세척 및 냉각수로 인한 최대 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다음에서 정한 백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냉각세척 후 중량증가 허용기준

식육의 종류	구 분	허용기준
닭고기		8%
칠면조고기	4.5kg 미만	8%
	4.5kg 이상 ~ 9kg 미만	6%
	9kg 이상	4.5%
그 밖의 가금육		6%

(라) 빙수냉각을 한 냉동식육의 최대 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증가된 중량의 백분율이 1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냉각시설의 온도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기냉각의 경우에는 해체 후 식육의 심부온도가 신속하게 5℃ 이하로 되어야 하며, 공기 유통과 적정 습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6) 식육의 포장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7)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 3. 토끼

토끼의 도살·처리방법은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4. 집유의 방법

가. 농장으로부터의 집유는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보냉탱크집유차량으로 원유를 옮겨 싣기 전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 검사실시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검사한다.

다. 집유된 원유는 신속하게 집유장 또는 유가공장에 운송하여 여과·냉각 또는 저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수출 등 특수한 목적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기준

가.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나. 바베큐 또는 제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가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살·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도체의 절단방법 및 집유의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작업개시 전 위생관리

- 가. 작업실, 작업실의 출입구, 화장실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작업 중 위생관리

- 가. 작업실은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안쪽부터 처리·가공·유통공정의 순서대로 설치하고, 출입구는 맨 바깥쪽에 설치하여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은 벽·바닥 등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하고, 냉장·냉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운반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손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생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작업 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 바. 작업 중 흡연·음식물 섭취 및 껌을 씹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시계·반지·귀걸이 및 머리핀 등의 장신구가 축산물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자·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책무

- 가. 영업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작업종료 후에 시설·장비 및 도구 등에 대한 위생 상태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나.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그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명하여 이를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영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지시한 사항을 즉시 시정·보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보완이 될 때까지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별기준

가. 도축업

- (1) 도살작업은 가축을 매단 상태 또는 가축이 바닥과 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 종업원은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수시로 작업칼·기구·톱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3) 종업원은 작업종료 후 오염물질 및 지방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대·운반 도구 및 용기 등 식육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 (4) 가축도살·지육처리 및 내장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복 및 앞치마를 갈아입고 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지육이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집유업

- (1) 원유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은 작업 중 수시로 손을 세척·소독하여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집유차량의 보냉(保冷)탱크, 검사용 기구, 집유(수유)호스 등은 수시로 이를 세척·소독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위생화를 소독조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4) 작업 전에 집유(수유)설비의 작동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집유차량의 보냉탱크 및 저유조 내 원유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6) 집유차량의 집유호스 및 저유조 수유호스 등은 벽·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 (1) 종업원은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 수시로 손·장갑·칼·가공작업대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2) 모든 장비·컨베이어벨트 및 작업대 그 밖에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3) 종업원이 원료작업실에서 가공품작업실로 이동하는 때에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복 또는 앞치마를 갈아입거나 위생화 또는 손을 세척·소독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축산물보관업

- (1) 오염된 기구를 만지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한 경우 등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2) 축산물을 취급할 때에는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제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제품이 작업장내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냉장(냉동)실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축산물운반업

- (1) 축산물의 상·하차 작업을 할 때에는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2) 작업 전에 운반차량 적재함·작업도구 및 위생화 등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 (3) 냉장(냉동)기를 가동하여 적정온도가 유지된 후 지육의 운반을 시작하여야 한다.
- (4) 식육은 벽이나 바닥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운반하여야 한다.
- (5)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축산물판매업

- (1) 식육을 판매하는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2) 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칼·칼갈이·도마 및 기구 등을 70% 알콜 또는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3) 식육 작업완료 후 칼, 칼갈이 등은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4) 냉장(냉동)실 및 축산물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5) 진열상자 및 전기냉장(냉동)시설 등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 (6) 우유류를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때에 사용하는 운반용기는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 (7) 식용란 보관·진열장소 및 운반차량의 내부는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적정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온도는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의2]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6관련)

###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장

### 2.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실태

### 3. 평가절차 및 방법 등

가.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0 관련)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 가. 닭·오리 식육: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kg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것
  - 나. 식용란: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할 것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닭·오리 식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닭·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
5. 수입된 닭·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수입 당시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6. 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말(당나귀 포함)·양·돼지 등 포유류

-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가) 가축의 자세·거동·영양상태·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체온을 측정한다.
  -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 (다) 필요한 경우 안검(眼瞼)·비강·구강·항문·생식기·직장검사를 실시한다.
-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 (1) 검사는 군별 검사와 개체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군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실시하고, 개체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생체검사대에서 실시한다.
- (2) 검사대상가축의 군별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수송 중 죽었거나 손상이 심하여 식육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골라내어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군별 검사는 가축의 자세·거동상태 등을 관찰한다.
- (5) 개체별 검사는 군별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하며, 털의 상태 및 안검·비강·항문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 (6)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생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하여 도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가축의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가)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

블루팅병 · 리프트계곡열 · 림프스킨병 · 가성우역(假性牛疫) · 소유행열 · 결핵병(結核病) · 브루셀라병 · 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 스크래피 ·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BSE) · 소류코시스(임상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 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만 해당한다) · 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 · 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 놀라타만 해당한다)

(나) 돼지열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돼지수포병(水疱病) · 돼지텃센병 · 돼지단독 · 돼지일본뇌염

(다) 양두(羊痘) ·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 비저(鼻疽) · 말전염성빈혈 · 아프리카마역(馬疫) · 광견병(狂犬病)

(라) 뉴캐슬병 · 가금콜레라 · 추백리(雛白痢) · 조류(鳥類)인플루엔자 · 닭전염성후두기관염 · 닭전염성기관지염 · 가금티프스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 · 농독증 · 패혈증 · 요독증 · 황달 · 수종 · 종양 · 중독증 · 전신쇠약 · 전신빈혈증 · 이상고열증상 ·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소 · 말(당나귀 포함) · 양 · 돼지 등 포유류

### (1) 검사항목

(가) 혈액 및 가축

(나) 머리 · 혀 · 인두후 · 목부위 및 그 인근 림프절

(다) 폐 · 폐문 · 폐림프절 및 폐종격

(라) 심장 · 심낭

(마) 횡격막

(바) 간 · 간문 및 그 인근 림프절

(사) 위 · 장간막림프절 및 망막

(아) 비장 · 췌장 · 신장 및 그 인근 림프절

(자) 방광 · 고환 · 음경 · 난소 · 자궁 · 질 및 외음부

(차) 지육

### (2) 검사방법

(가) 소

1) 내외교근은 하악과 병행하여 절개하여 검사한다.

2) 간장은 담관 및 우엽 · 좌엽을 가로로 절개하여 검사한다.

3) 신경은 지방을 분리한 후 검사한다.

- 4) 자궁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 5) 심장·심낭은 양심실을 동맥에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 (나) 말·당나귀
  - 두부를 횡단하여 비중격을 절개하여 점막을 검사한다.
- (다) 면양·산양
  - 간·폐 및 두부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 (라) 돼지
  - 복근·횡격막·목·심장·허 및 인두후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구 분	대상질병	폐기범위			가축별
		일부	전체	폐기 세부내용	
위장관	농양	○			포유류
	복막염		○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장염		○	장관 전체 폐기	소·돼지
	직장협착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돼지
	제2위염	○		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형성시 식육 전체 폐기	반추류
	제1위비장염		○	위장관 전체 폐기	반추류
	비종		○	비장폐기·전신성 병변 여부 확인	포유류
장간막림프절결핵		○	식육 전체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간	복막염	○			포유류
	농양		○	간 폐기	포유류
	간경화	○			포유류
	간출혈	○			포유류
	지방간		○	간 폐기	포유류
	부맥반	○			포유류
	결핵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간질증		○	간 폐기	소
	밀크반점		○	간 폐기	돼지
	세경낭미충		○	간 폐기	돼지
	파라티프스결절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소·돼지
심장·폐	점상출혈			전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폐 폐기	포유류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심장 전체 폐기	포유류
	심근농양		○	내장·머리 및 지육 폐기	포유류
	폐수종		○	폐 폐기	포유류
	흡입성출혈		○	폐 폐기	포유류
	간질성폐기종		○	폐 폐기	포유류
	기관지확장증		○	폐 폐기	포유류
	화농성기관지폐렴		○	폐 폐기	포유류



	심장내막염 폐렴·흉막염		○ 심장 폐기 ○ 폐 폐기, 폐와 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폐·전체갈비부위 폐기	포유류 포유류
신 장	점상출혈 농양 백반신과신우신염 신낭 오염		○ 신장 폐기, 전신성감염증으로 추정 시 다른 장기와 지육을 정밀검사 실시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농양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 신장 폐기 ○ 신장 폐기 ○ 신장 폐기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머리·혀	농양 오염 결핵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 눈편평상피암 림프절의 혈액흡수	○	○ 관련장기 폐기 ○ 오염부위 폐기 정밀검사 실시 ○ 관련장기 폐기 ○ 머리 폐기 관련머리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포유류 소·돼지 소 소 돼지
지 육	화농성 병변 관절염 복막염 흉막염 창상, 좌상 오염 결핵 방선균증 피부병변 (농양·구진·농포)	○ ○ ○ ○ ○ ○ ○ ○ ○	농양부위 폐기 관련 부위 폐기, 전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지육 및 내장 폐기 관련 부위 폐기 관련 부위 폐기 악취가 나면 전체지육 폐기 관련 부위 폐기 ○ 전체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관련 부위 폐기 관련 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구진 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의 농양 시 전체지육 폐기, 피부청색증 시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소·돼지 소 포유류

####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하고,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린 식육(이하 “부정행위식육”이라 한다)의 검사는 수분단백비 등 이화학적 검사로 한다.

#### 나.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 (1) 검사구분

해체 전 검사 및 해체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2) 검사내용 및 방법

###### (가) 해체 전 검사

- 1) 우모 및 잔모의 제거상태
- 2) 발목부위의 기형과 목뼈의 적정제거여부 확인
- 3) 백혈병·패혈증·독혈증·관절염·염증·농양·궤양·피부기생충증·황색종증의 감염여부 검사
- 4) 멍들거나 도살 전에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이물질오염도체, 심하게 탕지른 도체(껍질이 익은 것을 말한다), 부패도체, 복부팽만도체여부 검사

###### (나) 해체 후 검사

- 1) 정상적인 도체절단 및 장기제거상태 확인
- 2) 내부장기·조직·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및 이물질오염여부 검사
- 3) 비장은 으깨어 보고 간은 손으로 진단하여 경변정도 및 표면의 이상여부 검사

#####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 (가)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 1) 결핵병 또는 백혈병에 감염된 도체
- 2) 서로 다른 장기에 2개 이상의 종양이 있는 도체
- 3) 심한 기낭염·복막염·복수증·내장유착 등이 있는 도체
- 4)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

###### (나) 부분폐기

- 1) 생체 및 도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1개의 장기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기만을 폐기하고, 2개 이상의 장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 전체를 폐기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어 전신성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면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2) 생체 또는 도체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1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장기를 포함한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한다.

다. 식육의 검사결과 부정행위식육으로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검사불합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착유시설 및 착유가축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 대장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납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 중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착유한 원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
  - 다. 항생물질·합성항균제 등을 사용한 후 그 제제의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 라. 생물학적 제제의 주사로 인한 뚜렷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가축
  - 마. 황달·방선균증·농독증·유방염·패혈증·부패성자궁염·중독증 또는 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 바.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또는 이상유를 분비하는 가축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1.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 전 검사

관능검사·비중검사·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 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나) 실험실검사

적정산도시험·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성분검사 및 그 밖의 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새로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축으로부터 착유한 원유를 납유한 농가, 그 밖의 실험실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원유를 납유한 농가의 원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 농가에서의 집유시 원유의 냉각온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설위생검사

집유 전후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원유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2. 식용란의 검사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알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껍질이 깨지거나 변질·부패되지 않아야 하며, 부화 등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 식용란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3. 가공품의 검사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대한 검사항목·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 4.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를 수 있다.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 (1)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무상 채취·수거 대상

- 가. 법 제12조,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 나.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 다.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단위)	비 고
식 육·포 장 육	500(g)	
원 유	500(ml)	농가별 채취량은 20ml
식 용 란	5(개)	
식 육 가 공 품	500(g, ml)	
유 가 공 품	500(g, ml)	
알 가 공 품	200(g, ml)	

비 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 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별표 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제21조 관련)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라.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축산물

마. 그 밖에 검역원장이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2)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축산물 또는 축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이라 한다)로 수입하는 축산물

(3)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4) 과거에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의 축산물

(5)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 중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그 반송사유가 축산물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축산물 또는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축산물

(6) 외화 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

(7)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축산물의 원료

나.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란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과거 정밀검사 실시여부 등을 종합하여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가목의 서류검사대상중 검역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6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축산물

####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가목(1)의 축산물(「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을 제외한다) 및 가목(3)의 축산물과 나목(1) 및 (2)의 축산물을 제외한다]
- (2) 국내외에서 유해성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
- (3) 과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 (4) 법 제19조에 따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 (5) 관능검사결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
- (6)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축산물
- (7)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축산물
- (8)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 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
- (9) 가목 (5)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반송된 축산물
- (10) (1)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축산물 중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축산물

####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원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3)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4)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 마. 수입축산물의 목적 외 용도사용

가목(2)의 규정에 따라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축산물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검역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거나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업자는 검역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3. 축산물의 정밀검사방법 등

#### 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유의사항

(1)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검역원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인이 검역원 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입신고량이 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입최소량에 미달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검역원장은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3)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회사의 동일한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입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최소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 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의사가 수입신고인 또는 해당 수입축산물의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4) 수입된 축산물이 다른 수입제품과 혼재(混在)되어 해당 수입 축산물의 확인 및 수입량 파악 등을 할 수 없거나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검체를 수거함에 있어 주위 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수입축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이송하게 하여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 다. 시료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1)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

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 (2) 수입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는 종전의 정밀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검역원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은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검역원장(수입신고인이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검역원장이 영 제18조의4 단서에 따라 정밀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5) 검역원장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동일한 것에 한한다)이 서류검사를 받고 통관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식중독균·유해물질의 오염 등에 의한 부적합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 등

수입신고인이 검역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이 법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32조 및 이 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현물검사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수입축산물의 전산관리

가.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의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 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가. 수입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 만료일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 관련)**

1. 합격표시 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 식육의 종류별로 별도 1, 별도 1의2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따른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2조의7에 따른 포장대상 식육의 경우 그 포장에 합격여부에 관하여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2의 검인
-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2의 검인
  - (나) 포장을 하는 경우: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나. 표시부위

- (1) 지육: 어깨·등·가슴·배·앞다리·뒷다리 등의 표면
- (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꼬리 등의 표면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

가. 시·도별 검인부호

시·도	부 호	시·도	부 호
서울특별시	서 울	강 원 도	강 원
부산광역시	부 산	충청북도	충 북
대구광역시	대 구	충청남도	충 남
인천광역시	인 천	전라북도	전 북
광주광역시	광 주	전라남도	전 남
대전광역시	대 전	경상북도	경 북
울산광역시	울 산	경상남도	경 남
경 기 도	경 기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 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 다. 별도 1과 별도 2의 스탬프식 검인의 “검”자, 시·도별 부호 및 도축장별 번호는 각각 평면에서 5mm 이상 양각되어야 한다.
-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

격에 대해서는 검역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3. 검인용 색소

가.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한다.

나. 검인용 색소는 식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한우고기: 식용색소 적색3호

(2) 육우고기(새끼를 낳지 아니한 젃소고기 및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의 고기를 포함한다): 식용색소 황색4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녹색을 나타낸다)

(3) 젃소·돼지 등 그 밖의 가축의 고기: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

다. 나목 외의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검인의 사용

가. 합격표시의 검인은 식육을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직접하거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원이 한다.

나. 냉장을 하는 경우의 합격표시는 냉장 후 출고하기 전에 할 수 있다.

다. 검인기 및 검인용 색소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관리하여야 하며, 검인기 보관상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회수된 축산물

마. 가축의 도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내장·피·가죽·발굽·머리·유방 등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가. 농장·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나. 사료 또는 비료(이하 “사료등”이라 한다)제조업체나 렌더링시설(도축부산물 열처리정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골분·육분·육골분·우모분 등 사료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동물원·농장 및 사료등제조업체 등에 사료 또는 사료등의 원료로 제공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그 사실을 검사불합격품등재활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검사불합격품 등의 물량이 적거나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사료등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해당 축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용도전환의 기준

가.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어야 한다.

나. 해당축산물에는 쇠붙이·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검사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기준 초과 또는 안전성 확보방법 등을 감안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 정지의 처분기준(제28조의4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4.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II.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2호	지정취소		
3. 검사 업무정지기간에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4.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4호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5.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5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p>6.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가. 별표 9의3 제1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9호라목·마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p> <p>나. 별표 9의3 제2호를 위반한 경우</p> <p>다. 별표 9의3 제3호를 위반한 경우로서</p> <p>1)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p> <p>2) 검사일지에 시험·검사일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p> <p>3) 검사일지에 검체사용량, 시험·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p> <p>라. 별표 9의3 제4호·제8호·제11호·제12호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표 제9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p> <p>마. 별표 9의3 제7호, 제9호아목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경우</p> <p>바. 별표 9의3 제6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p> <p>1) 3개 이상인 경우</p> <p>2) 3개 미만인 경우</p>	<p>법 제20조 제6항제6호</p>	<p>검사업무 정지 15일</p> <p>검사업무 정지 1개월</p> <p>검사업무 정지 1개월</p> <p>시정명령</p> <p>검사업무 정지 7일</p> <p>시정명령</p> <p>검사업무 정지 7일</p> <p>검사업무 정지 7일</p> <p>시정명령</p>	<p>검사업무 정지 1개월</p> <p>검사업무 정지 3개월</p> <p>검사업무 정지 3개월</p> <p>검사업무 정지 7일</p> <p>검사업무 정지 7일</p> <p>검사업무 정지 7일</p> <p>검사업무 정지 15일</p> <p>검사업무 정지 15일</p> <p>검사업무 정지 15일</p>	<p>검사업무 정지 3개월</p> <p>지정취소</p> <p>지정취소</p> <p>검사업무 정지 15일</p> <p>검사업무 정지 1개월</p> <p>검사업무 정지 15일</p> <p>검사업무 정지 1개월</p> <p>검사업무 정지 1개월</p> <p>검사업무 정지 1개월</p> <p>검사업무</p>
---	----------------------	--	---	--

사. 별표 9의3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2개월	정지 15일 지정취소
-----------------------------------	--	-------------------	----------------------------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제28조의4 관련)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에 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기구류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된 검사의 절차·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시험일시,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시약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과 분석기기 출력물 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당 사항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되, 검사결과에 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6.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가. 업소명 및 소재지
  - 나. 의뢰자 및 의뢰기관명
  - 다. 의뢰 또는 접수번호 및 발급번호
  - 라.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바. 검사기준·규격 및 결과(검사수치 등), 적·부 여부의 판정
  - 사. 검사기관명
  - 아. 검사목적, 검사성적서 발급일 및 검사담당자 성명
7.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 (1) 검사 관련 기록을 위·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2) 의뢰받은 검사물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물체가 아닌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나.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것

다. 의뢰받은 검사물체별로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물체를 혼합·조제하여 검사하는 것

라. 미생물시험 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것

마. 실험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바. 공시험(Blank test)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및 시약을 사용하는 것

아. 판정이 모호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자. 그 밖에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

10.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이 되는 축산물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검사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개방식으로 설치하되,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 (라) 계류장에는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틀·조명장치(밝기가 11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등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바)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에는 가축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획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
- (사)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천정에 설치하는 아이빔은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의 높이를 두어야 한다.
- (자)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차) 작업실은 도살실·지육처리실·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카)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

- 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 작업실은 가축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출입문은 공기스크린 장치를 하거나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파)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옷장·신발장·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체온계·청진기·해부기·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거)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 (너) 급수시설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더)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러)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머)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 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버)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 (어)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 (저)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 (2) 개별시설기준
- (가) 소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 냉장·냉동실, 계량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 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계류장	150㎡ 이상 (1두당 3.3㎡ 이상)	냉장·냉동실	41.25㎡ 이상 (평면 3.3㎡당 4두 기준)
생체검사장	15㎡ 이상	탈의실 등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절한 면적
작업실	100㎡ 이상	부대시설	
검사시험실	20㎡ 이상		
원피처리실	30㎡ 이상		

-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며,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11)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13)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우지육 4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 14)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말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말과 말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3) 소 도축업의 영업자가 말 도축업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말 도축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을 감안하여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양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돼지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박피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냉장·냉동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계류장	100㎡ 이상 (1두당 0.83㎡ 이상)	냉장·냉동실	61.88㎡ 이상 (평균 3.3㎡당 8두 기준)
생체검사장	15㎡ 이상	탈의실 등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작업실	200㎡ 이상	부대시설	이용에 적절한 면적
검사시험실	20㎡ 이상		
원피처리실	30㎡ 이상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고,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11) 도살실에는 돼지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 냉장·냉동실은 평균 3.3㎡당 돈지육 8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14)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

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치하되,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탕지시설까지의 라인은 도체의 방혈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하되,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수성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작업실 안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탕지시설·탈모시설·잔모처리시설·내장적출시설·도체절단기 및 냉각시설로 구획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4)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5) 작업라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가금의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7) 탕지시설은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탈모시설은 콤베어식·이동식탈모기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내장적출시설 안에는 콤베어식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0) 냉각시설은 냉풍냉각·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 11) 내장처리시설은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 검사시험실은 책임수의사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실 안에는 심부온도계·시료채취기 등 시험기구류와 해부기구세트, 청진기, 기구보관상자, 색소·검인기보관상자(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냉장고 등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가 있어야 하고,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차) 소독준비실의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 (카)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타)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파)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거)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 (더)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 (러)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닭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5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냉장·냉동실	100㎡ 이상	탈의실 등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절한 면적
작업실	200㎡ 이상	부대시설	
검사시험실	20㎡ 이상		

-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6) 탕지시설은 도체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온수가 공급되어 깨끗한 온수가 나오는 곳에서 도체를 꺼낼 수 있도록 자동탕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향문제거기, 허파제거기, 기도·식도인출기, 내외부세척기·내장적출시설은 자동설비를 권장한다.
- 8) 검사시험실에는 (1)공통시설기준 중 (자)의 시설·장비 외에 현미경과 혈청검사 또는 잔류물질검사에 필요한 간이검사기구류가 있어야 한다.
- 9)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10)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닭 수송용기의 세척·소독시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1) 영업자가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모·내장 등 동물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사료의 원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안에 렌더링설비를 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 (1) 도축업의 영업자가 같은 도축장에서 2종류 이상의 가축을 도살하거나 같은 작업장 안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하려는 경우 검사시험실, 소독준비실, 원피처리실, 내장처리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장·냉동실의 면적은 가축의 지육별 수용기준을,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가축별 면적기준을 각각 합산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 (2)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수출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의 요구기준에 적합한 식육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집유업

가. 집유장은 원유취급실 및 검사실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집유장의 주위환경은 매연·먼지 및 악취 등이 없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원유를 받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의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주차장·차도 등은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원유취급실에는 다음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 저유조 및 밀크펌프 등이 있어야 하고 유량기 및 냉각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원유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세척·분해·조립이 쉬운 것으로 설치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유조와 밀크펌프는 차량에 부착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 (2) 면적은 작업에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내벽·천정 및 출입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바닥은 타일·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사면을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다)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출입구는 개폐식으로 하고 그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채광·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저유조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8시간 이상 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보냉 또는 냉각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계량기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검사실

(1) 검사실은 30㎡ 이상의 면적으로 하고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 및 시약을 비치하여야 하며, 집유장의 소독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약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2)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성분검사기·세균수검사기 및 체세포검사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우유비중계	5개 이상	28. 알콜시험관 또는 알콜시험관	5개 이상
2. 원통실린더	5개 이상	29. 온도계	2종 이상
3. 주정계	5개 이상	30. 냉장고	
4. 진액검사기		31. 집락계산기	
5. 산도측정장치		32. 페트리디쉬	20개 이상
6. 증류수 제조장치		33. 가스버너 또는 전기풍로	2개 이상
7. 겔베르 유지계		34. 비이커(대·중·소)	각 5개 이상
8. 유지방 원심분리기		35. 삼각플라스크(대·중·소)	각 5개 이상
9. 피펫 10ml(황산용)	5개 이상	36. 메스플라스크(대·중·소)	각 3개 이상
10. 피펫 11ml(우유용)	5개 이상	37. 피펫(0.01-10ml 5종)	10개 이상
11. 피펫 1ml(아밀알콜용)	5개 이상	38. 자불소독기	3개 이상
12. 향온수조	2개 이상	39. 뷰우렛	3개 이상
13.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40. 깔때기	2개 이상
14. 고압멸균기		41. 메스실린더	5개 이상
15. 원심분리기		42. 시험관	필요량
16. 화학천평	1대 이상	43. 평량병	10개 이상
17. 교반기		44. 시약병(대·중·소)	각 10개 이상
18. pH메타 또는 pH페이퍼		45. 스탠드	3개 이상
19. 부란기(인큐베이터)		46. 클램프	2개 이상
20. 데시케이터	1대 이상	47. 시험관꽂이	10개 이상
21. 시약스폰	2개 이상	48. 삼발이	2개 이상
22. 가위	2개 이상	49. 진열장(시약보관용)	
23. 핀셋	2개 이상	50. 현미경	
24. 솔	2개 이상	51. 유성분 검사기	
25.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52. 세균수 검사기	
26.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53. 체세포수 검사기	
27. 알콜램프	2개 이상		

(3) 검사실 안은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한다.

(4) 검사실은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냉·온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실 안의 온도계와 습도계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바. 위생·편의시설

종업원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의 탈의실 및 휴게실이 있어야 하며 수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사.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하수구는 암거 또는 상부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자. 화장실

(1) 화장실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바닥·벽 및 천정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방충·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카. 그 밖의 시설

(1) 집유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집유탱크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과 시설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동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집유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집유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 타.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1)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자가 집유한 원유를 유가공업의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하는 경우 제3호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검사실(검사시험기구 및 장비를 포함한다)·창고·급수시설·화장실·위생편의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농가에서 집유한 원유를 집유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유가공업의 작업장 안에 있는 집유시설로 직송하는 경우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3. 축산물가공업

#### 가.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냉장·냉동이 필요한 축산물에 한한다)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직접 원료나 축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3) 축산물취급시설 등
- (가)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축산물취급시설은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축산물취급시설 중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5) 화장실
-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 및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 (다) (가) 및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검사실
-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2) 2개소 이상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같은 법인·같은 영업자가 자사의 기존 검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축산물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나)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개별시설기준

##### (1) 식육가공업

(가) 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베이컨·건조저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의 시설기준은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유가공업

(가) 유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원료의 배합 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버터·치즈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나)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집유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은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3) 알가공업

(가)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세란기·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알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1)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4. 축산물보관업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에는 상하차대·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조명시설은 75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방서·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축산물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식육포장처리업

가.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

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료나 식육포장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냉동·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원료와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허가관청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

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6. 축산물운반업

### 가. 운반시설

-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혈액·오수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도축장에서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을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다. 차고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라.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7. 축산물판매업

### 가. 공통시설기준

-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

대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호가목을 준용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제5호가목을 준용한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한다.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가)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 (다) 보관시설은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우유류판매업

- (가)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한다.

(4) 축산물수입판매업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6) 식용란수집판매업

(가)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검란·선별(검란·선별이 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인쇄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영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방서·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식용란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차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된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마)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알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에 따라 처분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2)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4)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횡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9조제2항·제15조·제17조·제18조·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2. 개별기준에서 정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라. 다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바. 같은 날 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사.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자.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1)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2)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의 경우로서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1)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2)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3)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차. 축산물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제6조·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카. 차목 단서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파.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

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5)의 경우에는 처분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산물을 처리·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한 축산물이 법 제4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자가 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한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축산물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적합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였고 회수 및 폐기와 축산물의 회수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탈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그 밖에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집유업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는 등 관리를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는 등 관리를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3)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위해요소의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부적절하여 동일한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4)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점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착유가 금지된 가축으로부터 점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3조제2항·제3항 위반			
가.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10일	20일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가.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4일 영업정지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7일	15일	1개월
가. 도축업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나. 집유업	15일	1개월	3개월
9. 법 제18조 위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10일	20일	1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10.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일	20일	1개월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가. 허가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7일	15일	1개월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또는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제3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4.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1) 제5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5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마.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및 원료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아.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원료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 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2)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경고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 경고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경고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0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 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 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폐기 경고	폐기 품목	폐기 품목

<p>너.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p>		<p>영업정지 7일</p>	<p>제조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p>	<p>제조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p>
<p>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경고</p>	<p>품목 제조정지 5일</p>	<p>품목 제조정지 10일</p>
<p>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p> <p>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p>		<p>경고</p>	<p>품목 제조정지 5일</p>	<p>품목 제조정지 10일</p>
<p>가.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p>				
<p>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p>
<p>2)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제조 정지 2개월</p>
<p>3)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경고</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다.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p>				
<p>1) 특정 원재료 또는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p>		<p>품목</p>	<p>품목</p>	<p>품목</p>

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1)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축산물만 해당한다)
-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1)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개월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시정명령	폐기 품목 제조정지 7일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품목	품목류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제조정지 1개월 경고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사. 조사처리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개월
1) 조사된 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경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2) 조사처리축산물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개월
아.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에 한함)폐기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5)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7)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타.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파.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축산물에 유전자재조합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을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경고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경고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경고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4. 법 제8조제2항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2조제3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

품목	품목	품목
제조정지	제조정지	제조정지
15일	1개월	2개월
경고	품목	품목
	제조정지	제조정지
	15일	1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5일	1월	2개월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15일	1개월
품목	품목	품목류
제조정지	제조정지	제조정지
1개월	3개월	3개월
품목	품목	품목
제조정지	제조정지	제조정지
15일	1개월	3개월
경고	품목	품목
	제조정지	제조정지
	15일	3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5일	15일	1개월
품목	품목	품목류
제조정지	제조정지	제조정지
1개월	3개월	3개월



수입신고한 경우			폐쇄
7.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수입축산물인 경우 해당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또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일	10일	20일
3) 제4호 라목·바목·사목·자목·차목·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경우(다목, 차목, 하목, 거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3조제1항 위반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p>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p>	<p>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14.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p> <p>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시설개선·회수·폐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p> <p>다.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가공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p> <p>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p> <p>마.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품목</p> <p>제조정지 1개월</p> <p>품목</p> <p>제조정지 7일</p> <p>품목</p> <p>제조정지 5일</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허가 취소</p> <p>품목</p> <p>제조정지 2개월</p> <p>품목</p> <p>제조정지 15일</p> <p>품목</p> <p>제조정지 10일</p>	<p>영업정지 3개월</p> <p>품목</p> <p>제조정지 3개월</p> <p>품목</p> <p>제조정지 1개월</p> <p>품목</p> <p>제조정지 20일</p>
<p>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17.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18.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경고</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다. 이물이 혼입된 것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1)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일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때	7일과 해당	15일과 해당	1개월과 해당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15일과 해당	1개월과 해당	2개월과 해당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3)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일	15일	1개월
5)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7)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외한 표시	경고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p>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p> <p>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p> <p>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p>		<p>영업정지 7일 경고</p>	<p>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p>
<p>4. 법 제8조제2항 위반</p>				
<p>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p>		<p>경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p>				
<p>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p>		<p>경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5. 법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판매한 경우</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6.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7.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p>				
<p>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p>				
<p>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1) 축산물운반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축산물보관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8.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			

<p>운반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p> <p>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p> <p>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p> <p>2)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p> <p>3) 제3호가목·나목·사목을 위반한 경우(가목 및 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p> <p>4)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5) 제3호아목·자목·차목·하목·거목·너목·더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 또는 머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p> <p>6) 제3호러목을 위반한 경우</p> <p>나. 가목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7일</p> <p>경고</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7일</p> <p>경고</p> <p>경고</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3일</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7일</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	---	--	--

<p>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15일)</p>
<p>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시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p>			
<p>마.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p>			

<p>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p>	<p>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아.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p>	<p>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p>			
<p>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나.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p>	<p>경고</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p>	<p>경고</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0일</p>
<p>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경고</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0일</p>

### 3. 과징금 제외대상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도축업·집유업: 2. 개별기준 가목의 표의

-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7)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개별기준 나목의 표의

- (1) 제1호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차목·카목1)·카목2)가)·타목1)·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호가목·라목3)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6)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다목의 표의

-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호가목1)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1호가목·라목·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 (4)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일반기준의 너목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에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아.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일부턴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축에 대한 도축 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 라.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

의사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책임수의사가 시험실 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집유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책임수의사가 시험실 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유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집유의 명목으로 원유대금 이외의 별도의 보조성 경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집유가 금지된 원유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가에서 착유된 원유를 집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2)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3)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나.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제품명 및 업소명

(2)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다. 장난감·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라. 조제유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의 표시

(3)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4)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5)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마.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등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자.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식육의 종류

(2) 식육의 원산지

(3) 식육의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개체식별번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간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자가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다만, 축산물운반업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식육판매업소의 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등기록부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지육은 매단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우지육의 경우에는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축산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다.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한다)·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을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내역서와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 별표 12 제4호다목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바.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조제유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의 표시
- (3)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 (4)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 (5)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 (6)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차.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파.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업소명
- 2)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하.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판매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포장육: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육의 종류·원산지

거.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종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러.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처리·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에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식용란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제2항 관련)**

1. 표시(축산물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1)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가)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의 표현

(다)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 유아식·환자식 등)

(2)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표현(예시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4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2호	시정명령
3. 법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4. 법 제6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3호 및 6호	지정취소
5. 법 제9조제5항 및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5호	시정명령
6.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6호	지정취소
7. 영업자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6호	시정명령
8. 위의 제2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위반으로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4호	지정취소

[별표 14의3]

###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 라.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차.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카.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타. 축산물에서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 혼입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파. 그 밖에 축산물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기구·포장에 관한 규격에 위반한 것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섭취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55조의2제1항 관련)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 가능

2. 긴급 회수문의 내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제조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번호 또는 롯데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적을 것

다. 회수사유:

라. 회수방법:

마. 회수 영업자:

바. 영업자 주소:

사. 연락처: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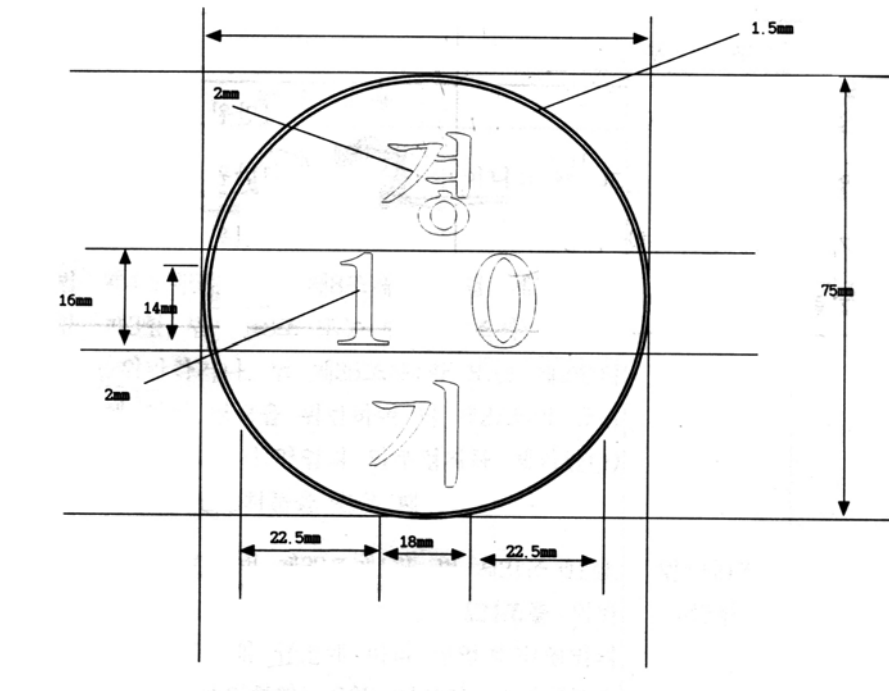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제60조관련)

구 분	수 수 료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만원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5천원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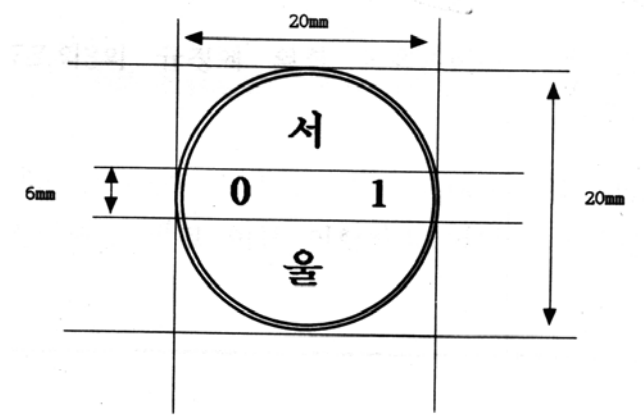
[별도 1]

검인(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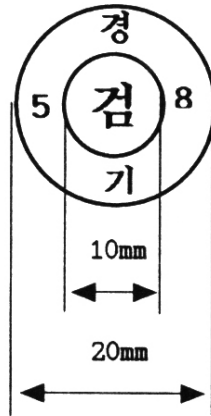
[별도 1의2]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등의 표면)



[별도 2]

검인(가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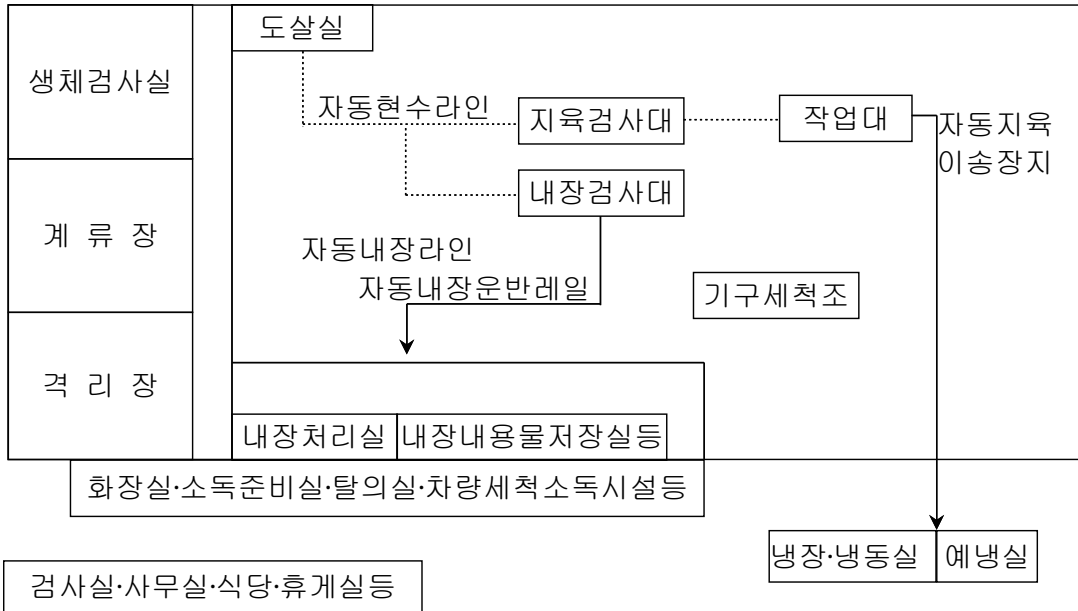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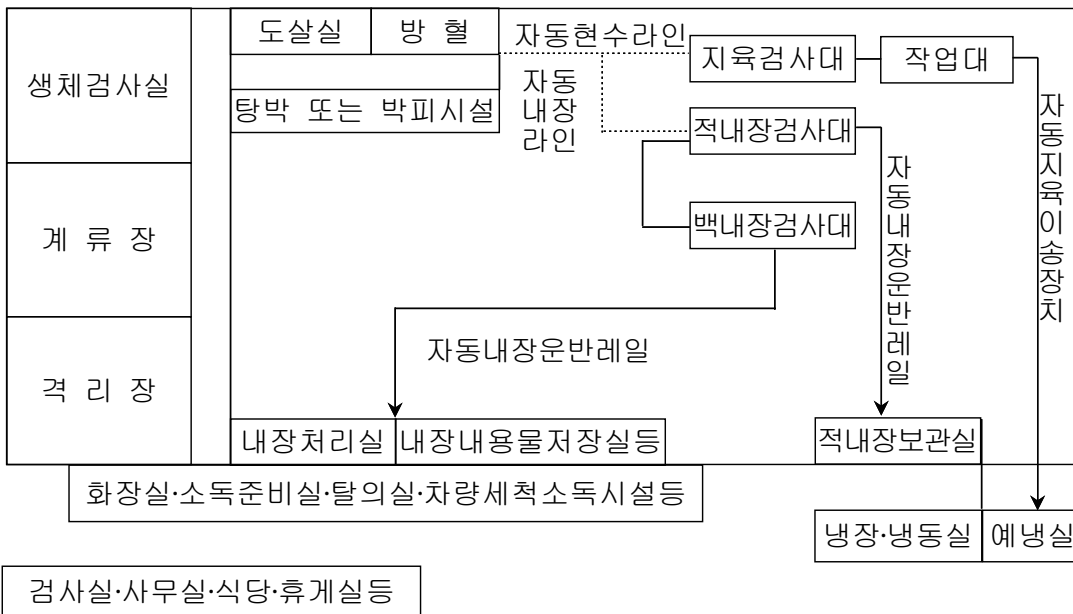
[별도 4]

###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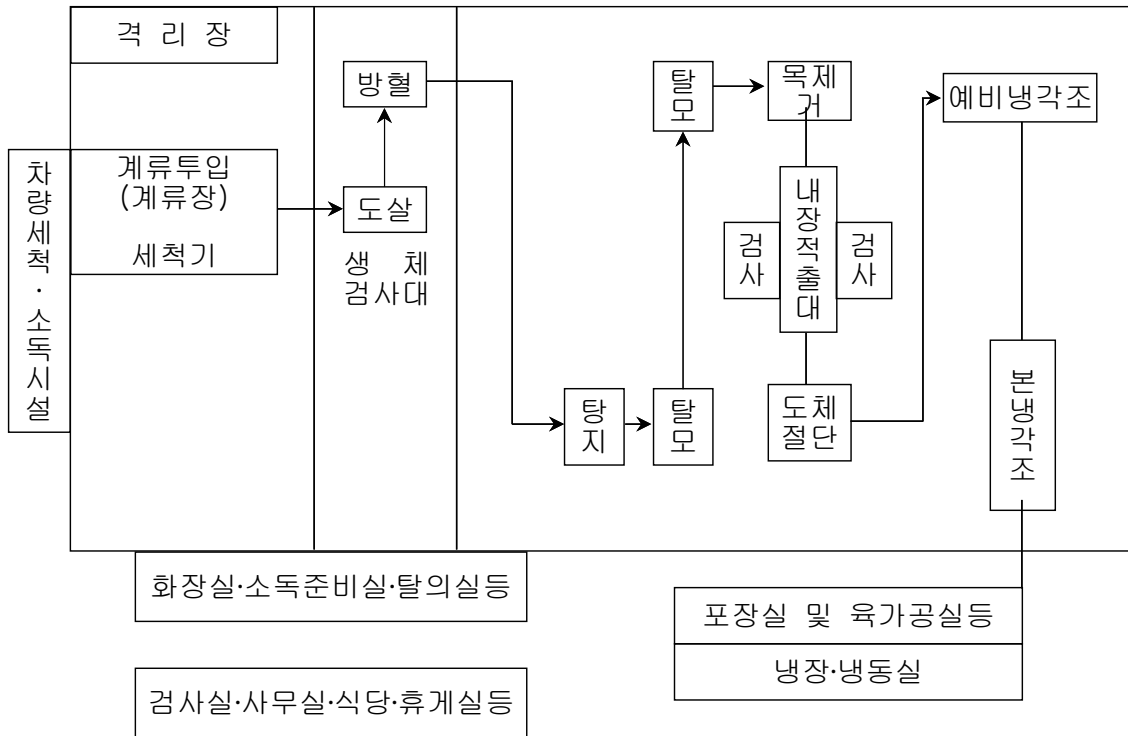
<돼지>



[별도 5]

###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 등 도살신고서	224
[별지 제1호의2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	226
[별지 제1호의3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	228
[별지 제1호의4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변경 신청서	230
[별지 제1호의5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도축장 확인서	232
[별지 제1호의6서식] 조사·평가 결과	234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235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검사대장	237
[별지 제4호서식] 도축검사증명서	238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신청서	239
[별지 제6호서식] 수거(압류)증	241
[별지 제7호서식] 검사관증	242
[별지 제7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감시원증	243
[별지 제7호의3서식] 검사원증	244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지정(변경)승인신청서	245
[별지 제9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247
[별지 제10호서식] 축산물 수입신고서	248
[별지 제11호서식] 축산물수입신고필증	250
[별지 제12호서식] 출입·검사등기록부	251
[별지 제13호서식] 수검검사 처리대장	252
[별지 제14호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53

[별지 제15호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	255
[별지 제15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사항 변경신고서	257
[별지 제15의3호서식]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재개]신고서	259
[별지 제15호의4서식] 축산물검사실적보고	260
[별지 제15호의5서식] 검사대장	261
[별지 제15호의6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연장신청서	262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	264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증	266
[별지 제18호서식] 영업허가관리대장	268
[별지 제19호서식]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270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272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274
[별지 제23호서식]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276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278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신고 관리대장	280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282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84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286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287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288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	290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291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293
[별지 제34호서식] 도축검사실적조사표	.....	294
[별지 제35호서식] 집유실적보고서	.....	296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	297
[별지 제36호의2서식] 안내문	.....	298
[별지 제37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299
[별지 제38호서식] 거래내역서	.....	301
[별지 제39호서식]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	302
[별지 제40호서식] 식용란거래내역서	.....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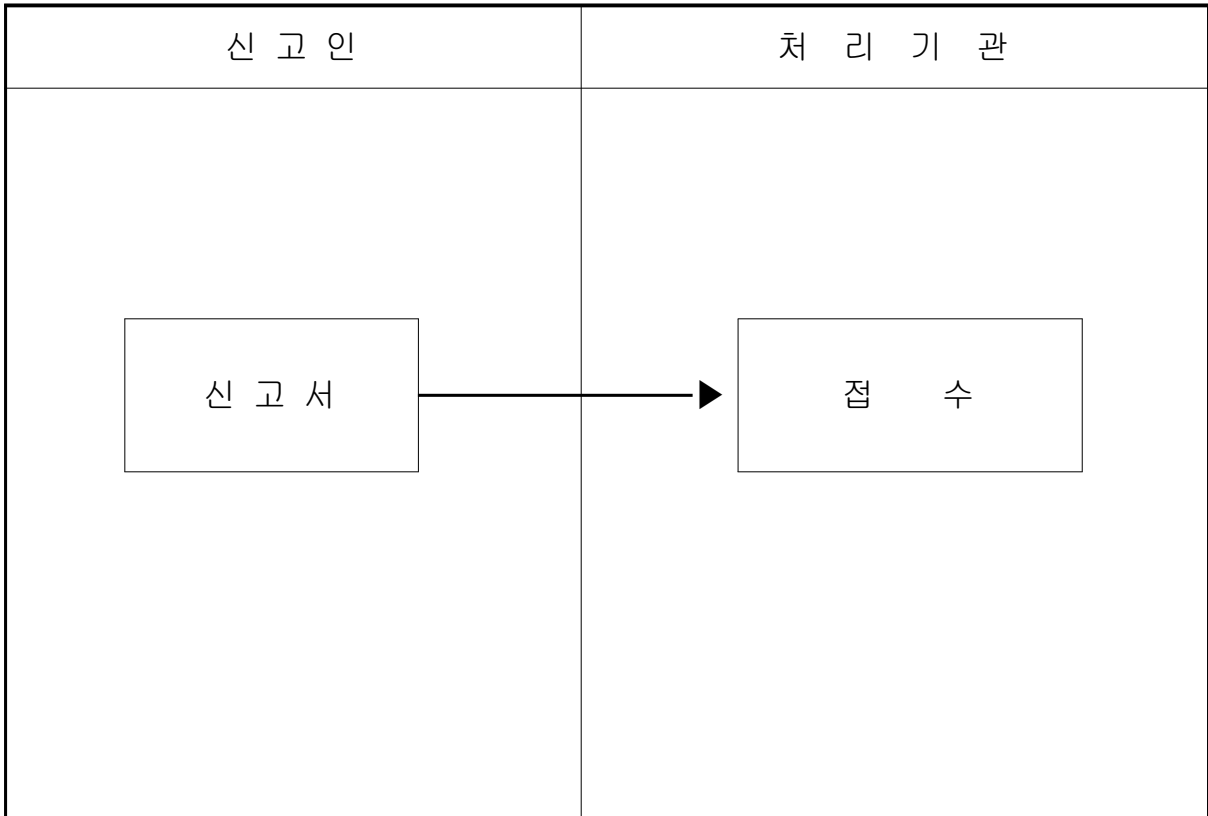


※ 신고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시·도	처리부서	축산과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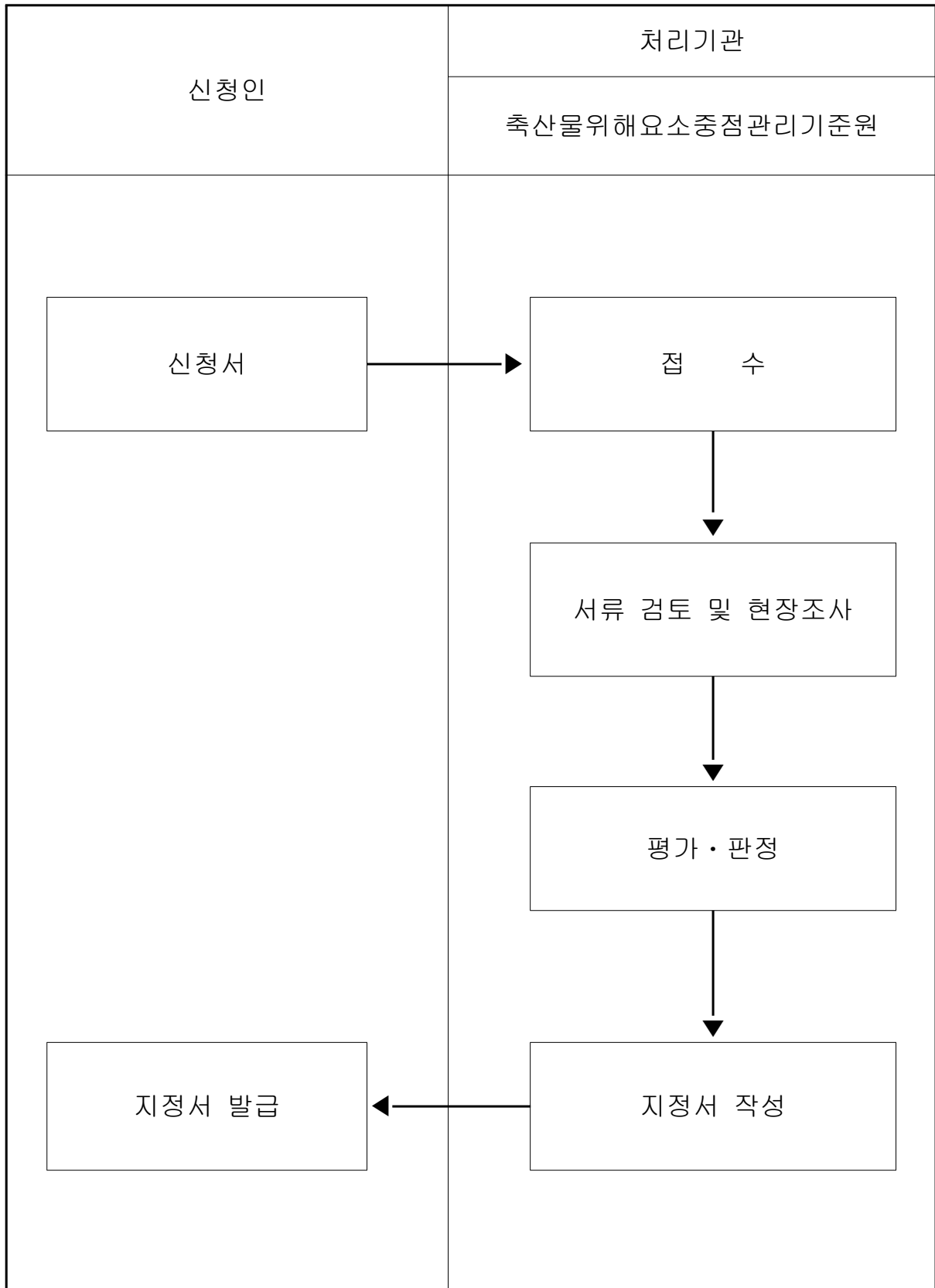
<b>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b>			처리기간		
			지정: 60일 연장: 120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등록)번 호		영업허가(신고수리·등록)년 월 일		
	작업장(업소·농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업종 또는 품목				
<p>「축산물위생관리법」 <input type="checkbox"/>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제7조의2제1항 에  <input type="checkbox"/> 제9조의3제2항 <input type="checkbox"/> 제7조의9</p> <p>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b>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b></p>					
<p><b>&lt;구비서류&gt;</b></p> <p>1. 지정신청의 경우</p> <p>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나.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p> <p>다.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p> <p>마.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p>					
<p>2. 지정연장신청의 경우</p> <p>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나. 지정서 사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수수료</td> </tr> <tr> <td style="padding: 5px;">「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정하는 수수료</td> </tr> </table>	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

영 업 자:

회사명(농장명):

소 재 지:

적용 업종 또는 품목:

중요 관리 점:

유 효 기 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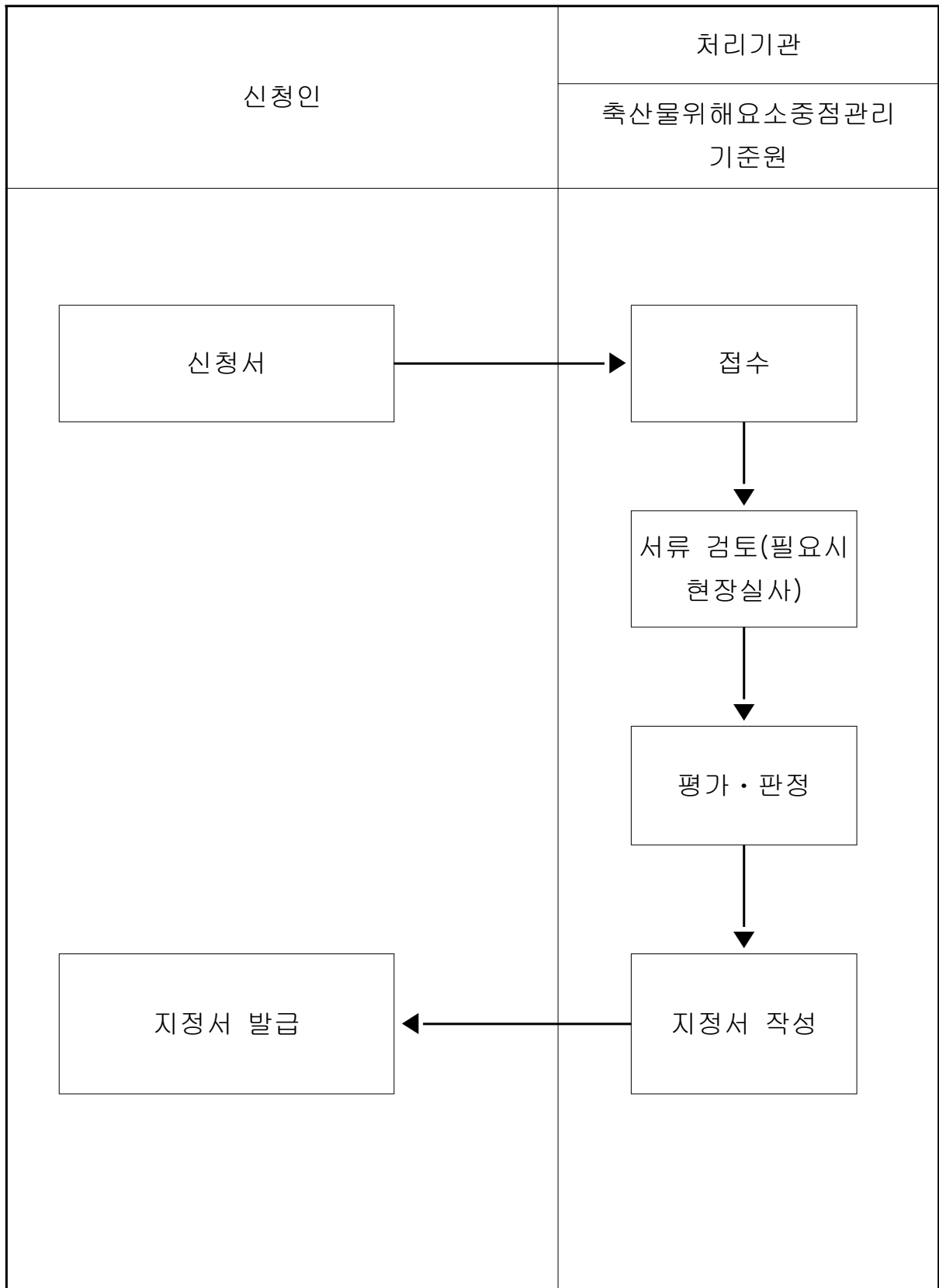
(뒤 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내용	확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도측장 확인서

영 업 자:

회 사 명:

소 재 지:

적용 품목:

조 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HACCP적용도측장으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변경 및 처분내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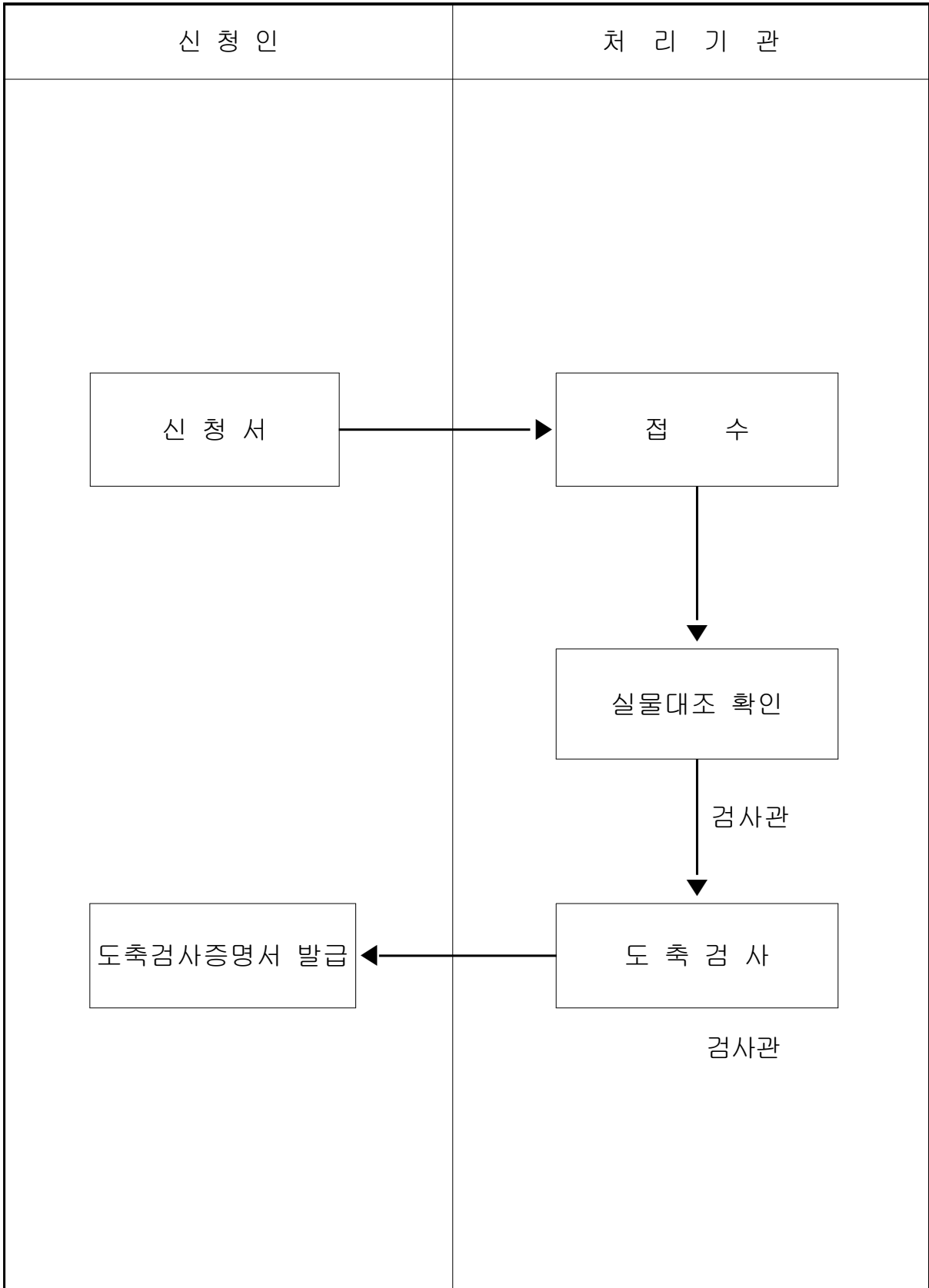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착유가축검사대장

검사자 ①	농장명	소재지	농장주	종업원수	사육두수	1일 착유량	검사항목												
							검사일 및 구분												
							1회	2회	3회	4회									
							적	부	적	부	적	부	적	부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우결핵 병·브루셀라병 검진 여부												
							2. 생물학적제제·항생물질제제·합성항균 제제 투여 및 질병에 감염된 가축의 격리 사육 여부												
							3. 착유가축의 청결 및 건강유지 상태												
							4. 착유장의 방충·방서·급수시설 및 수 세설비 여부												
							5. 천장·벽의 먼지 등 청결유지 상태												
							6. 착유장의 채광 및 환기 여부												
							7. 적합한 착유용기·기구 사용 및 사용후 소독·세척 등 보관 상태												
							8. 개체별 전용 유방세척수건 사용 여부												
							9. 원유냉각기 설치 및 냉각온도 유지 상태												
							10. 착유가축배설물의 위생적인 처리 상태												
							11. 착유가축의 외부환경 위생 상태												
							12. 수의사의 관리 여부												
							13. 그 밖의 위생관리 상태												

297mm×210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2. 두수 및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함):
3. 중 량: 지육 kg, 내장 등 기타 kg
4. 작 업 장 명:
5. 검 인 번 호:
6. 도 축 일: 년 월 일
7. 도축 의뢰인 주소: 시 시 읍  
군 면 (성명: )  
도 구 동
8.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9.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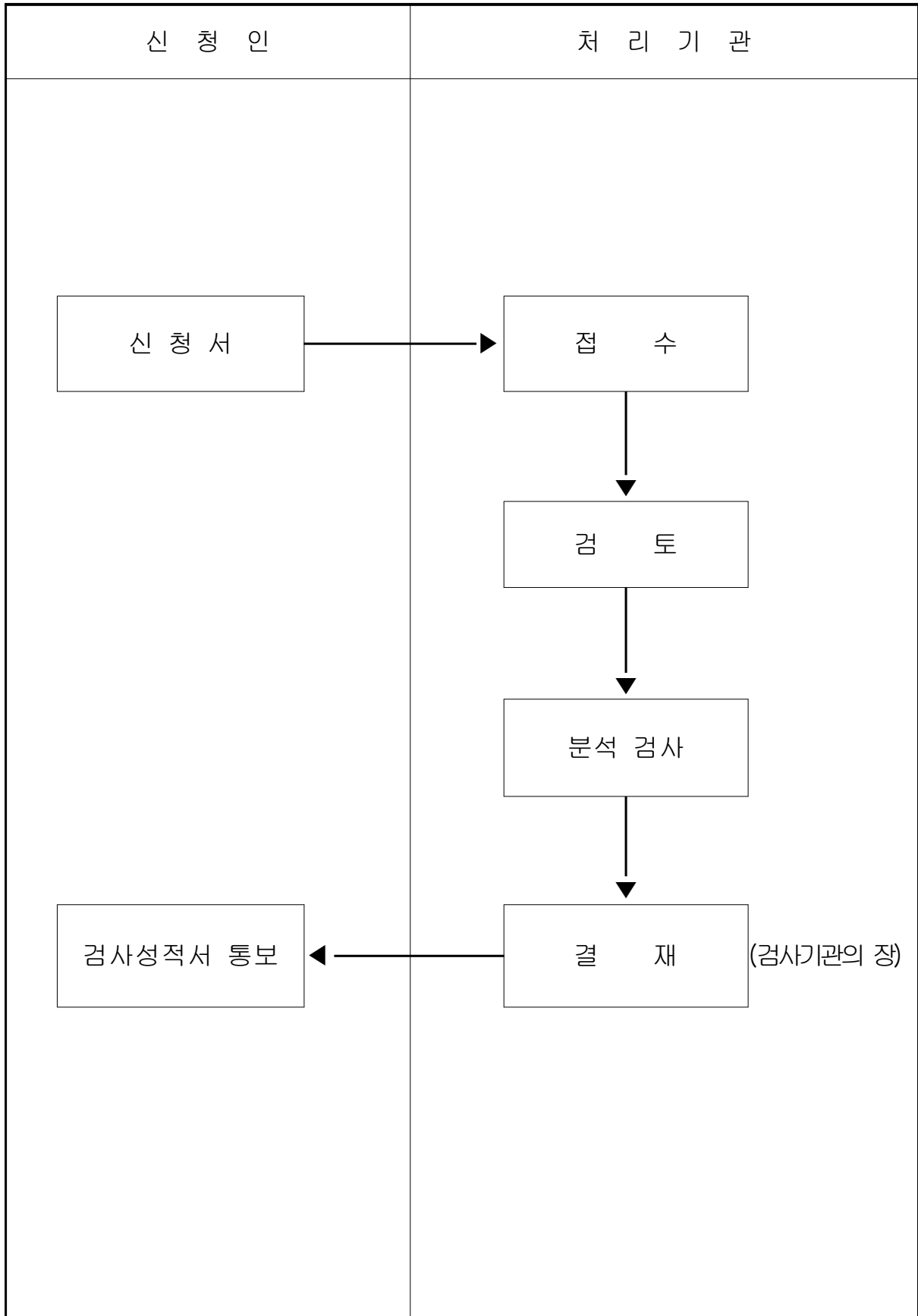
(수의사 면허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제 호
<b>검 사 관 증</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div>
<b>성 명</b> <b>기 관 명</b>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b>검 사 관 증</b>
소속/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른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기 관 장 명 의</b>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수거·검사·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 쪽)

제 호
<b>축산물위생감시원증</b>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b>축산물위생감시원증</b>
소속/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 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수거·검사·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 쪽)

제 호
<b>검 사 원 증</b>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b>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b>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b>검 사 원 증</b>
소속/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b>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 통에 넣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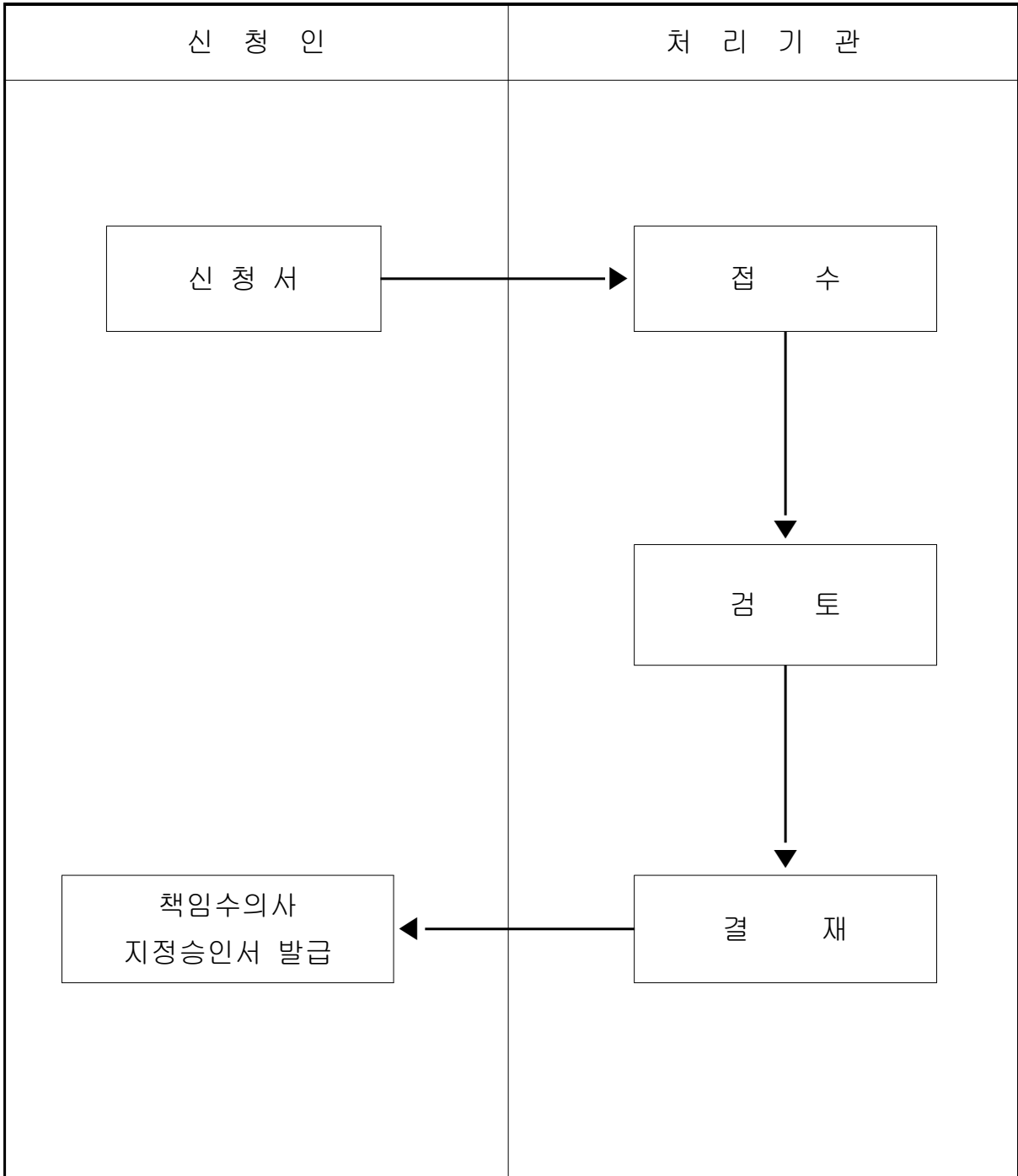


※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시·도	처리부서	축산과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성 명:

수의사 면허번호:

위의 사람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작업장의 책임수의사로 지정승인합니다.

작업장의 종류:

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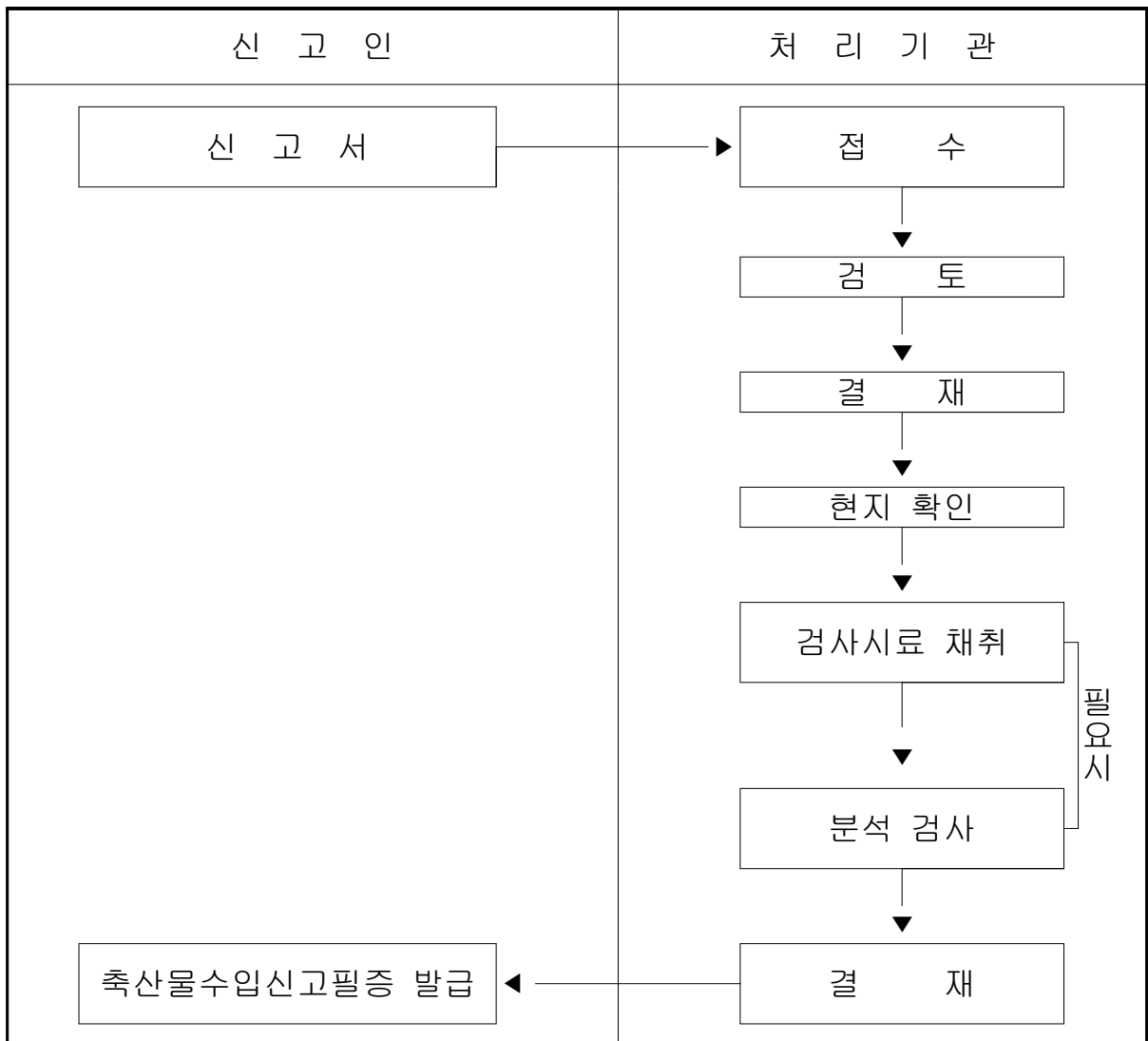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번호	성분	성분배합비율(%)	번호	성분	성분배합비율(%)
유의사항		성분에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습니다.			
가공공정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b>축산물수입신고필증</b>			
발 급 번 호		용 도	
신 고 품 명	제 품 명		
	한 글 명		
제 품 유 형			
포장 수량 및 형태	(단위: )	순 중 량	kg
화물관리번호	B / L 번 호		
수입유통식별번호			
수 출 국		생 산 국	
보내는 사람 또는 수출회사			
수출국 가공회사			
선 적 지		선적 연월일	
도 착 항		도착 연월일	
받는 사람 또는 수입회사	성명 또는 회사명		
	주 소		
검 사 결 과		유통기한 만료일	
신고필증 발급조건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5px;">직인</span></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 출입·검사등기록부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법 조 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33조(판매등의 금지)			
그 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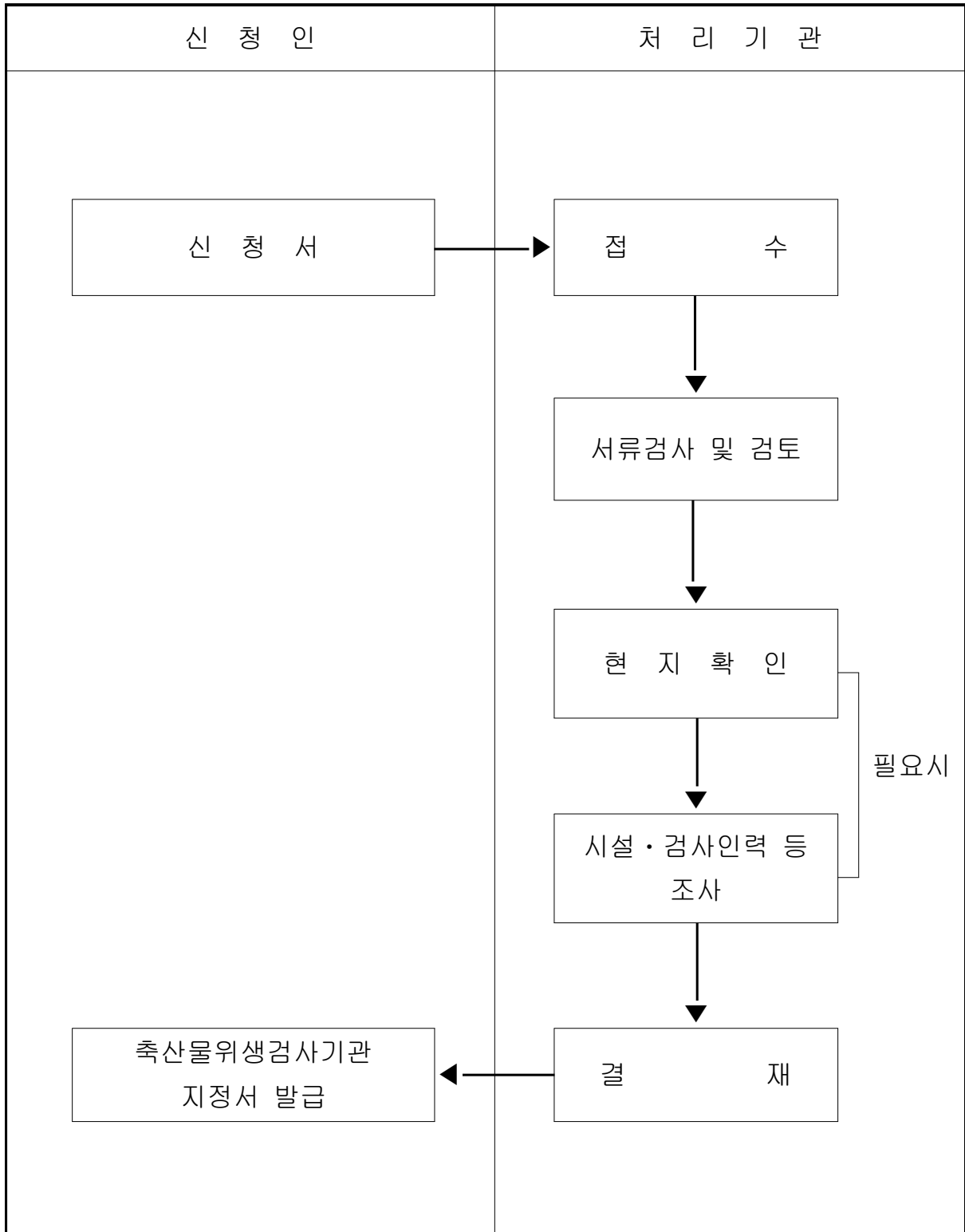


<b>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b>			처리 기간	서류검사 7일 현지확인 14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검사기관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의 범위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p>				
<p>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실 평면도 1부</li> <li>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1부</li> <li>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li> <li>나. 제품종류별 검사기간</li> <li>다.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li> <li>라.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li> <li>마.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li> <li>바.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li> <li>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항</li> <li>아.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li> </ol> </li> </ol>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호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

대 표 자: (생년월일: )

주 소:

검 사 기 관 명 :

검 사 대 상:

검 사 항 목:

유 효 기 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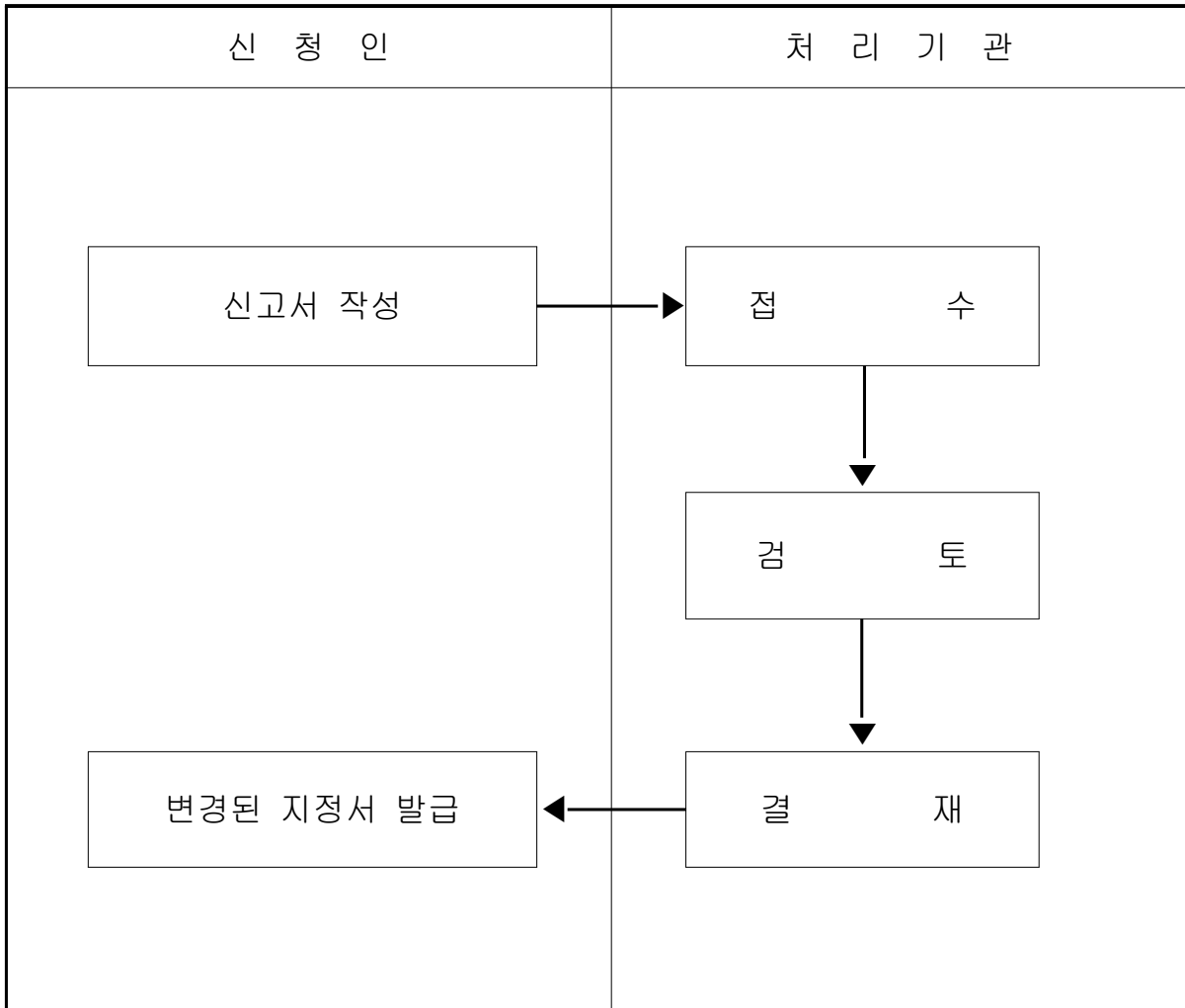
직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경유)

제 목 축산물검사실적보고(      년      반기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검사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종 별	계	적 합	부 적 합	기 타

끝.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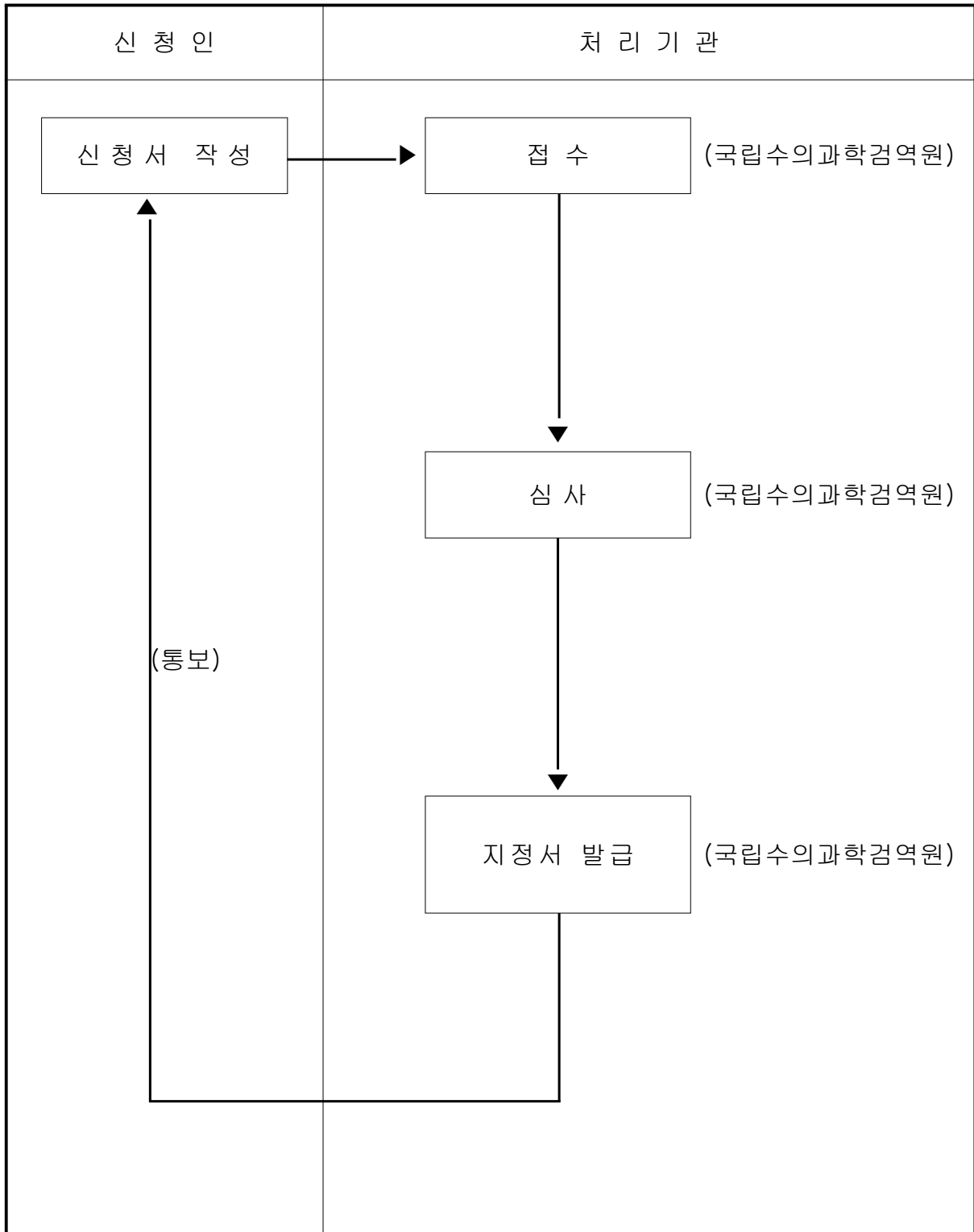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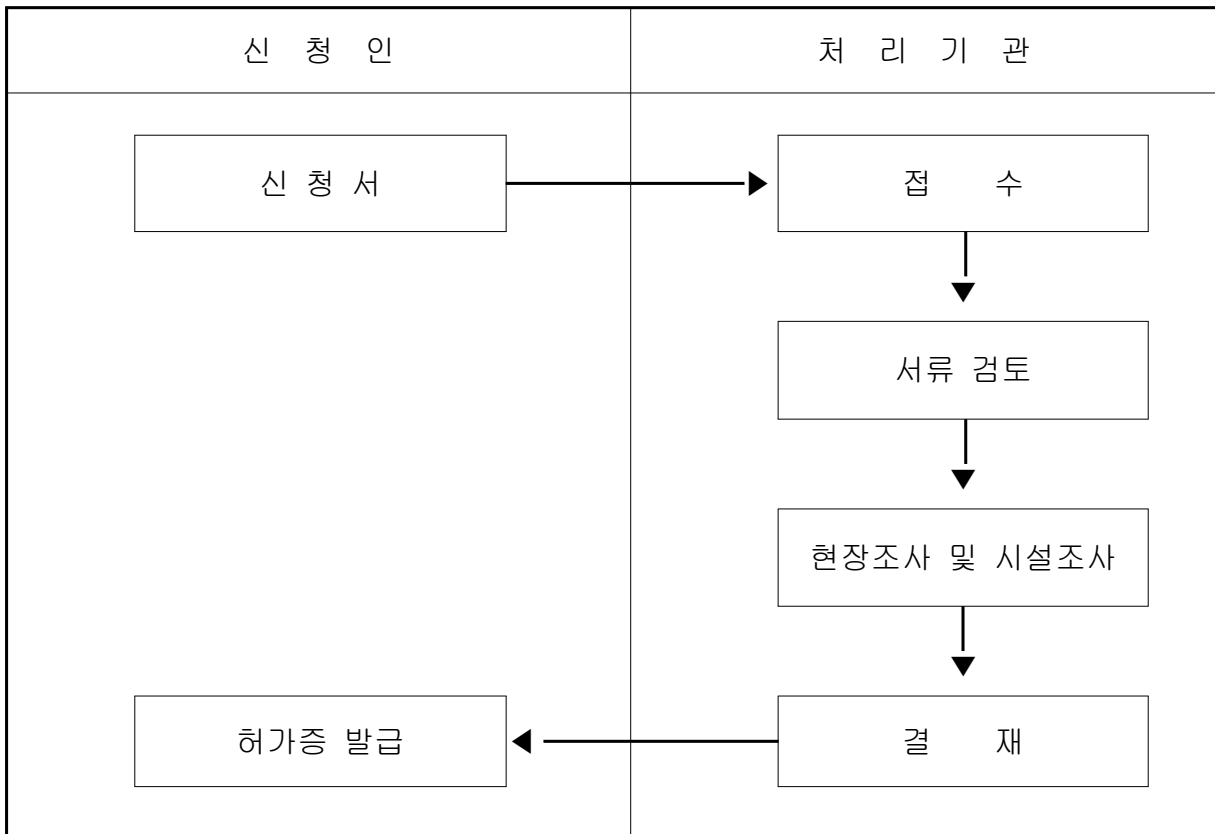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시 · 도 시·군·구	처리기간
		특 별 시: 8일 광역시·도:10일 시·군·구: 7일
처리부서	축 산 과	
유의사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 허 가 증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

주 소:

영업의 종류: 가축의 종류:

허 가 조 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영업허가 관리대장

영업허가사항			계 인		
업 소 명					
영업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	년 월 일	
영업장 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허가 조건		영업허가 시설범위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급·성명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업 소 규 모											
공 장 규 모									종 업 원 수		
대 지 면 적			㎡			총 원			명		
건 물 면 적			㎡			본 사			명		
작 업 장 면 적 (처리·가공장)			소 계 ㎡			공 장			사 무 직		
									명		
									판 매 직		
명											
생 산 직			명								
건물 소유 구분			<input type="checkbox"/> 자 가			<input type="checkbox"/> 임 대					
책임수의사 지정승인·해임신고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수의사 면허 번호	직 책	신 고 내 용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수의사 면허 번호	직 책	신 고 내 용	
				구분(지정 ·해임)	승인일· 수리일					구분(지정 ·해임)	승인일· 수리일
그 밖의 행정 조치 사항											
연월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월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행 정 처 분 사 항											
처 분 연월일	문서 번호	위반 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 재 자 직급·성명	처 분 연월일	문서 번호	위반 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 재 자 직급·성명		
비 고: 위생관리책임자(위생교육 관련) 지정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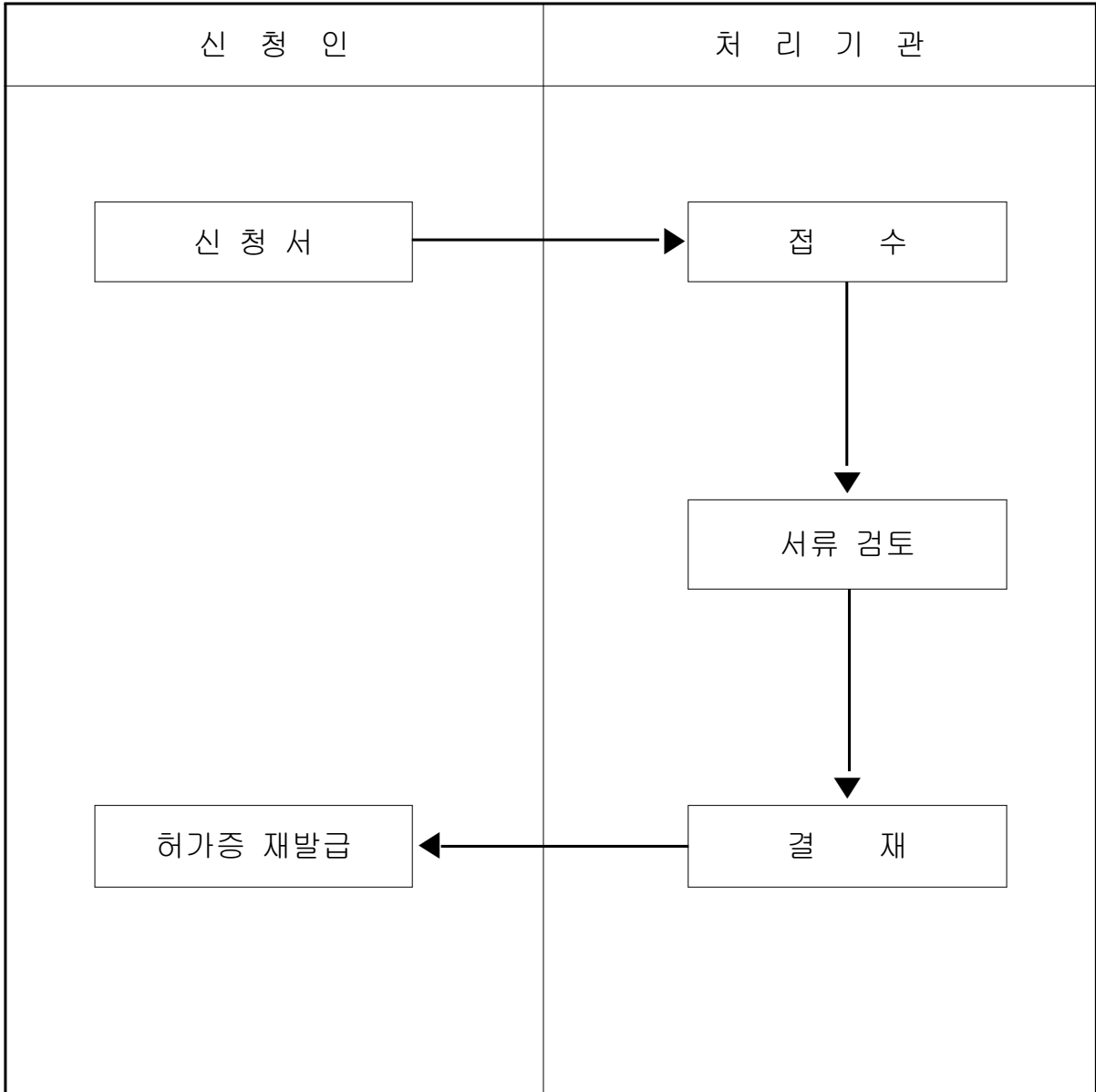


※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시 · 도 시 · 군 · 구	처 리 부 서	축 산 과
처 리 기 간	◦특별시 · 광역시 · 도: 3일      ◦시 · 군 · 구: 즉시		
유 의 사 항	⑤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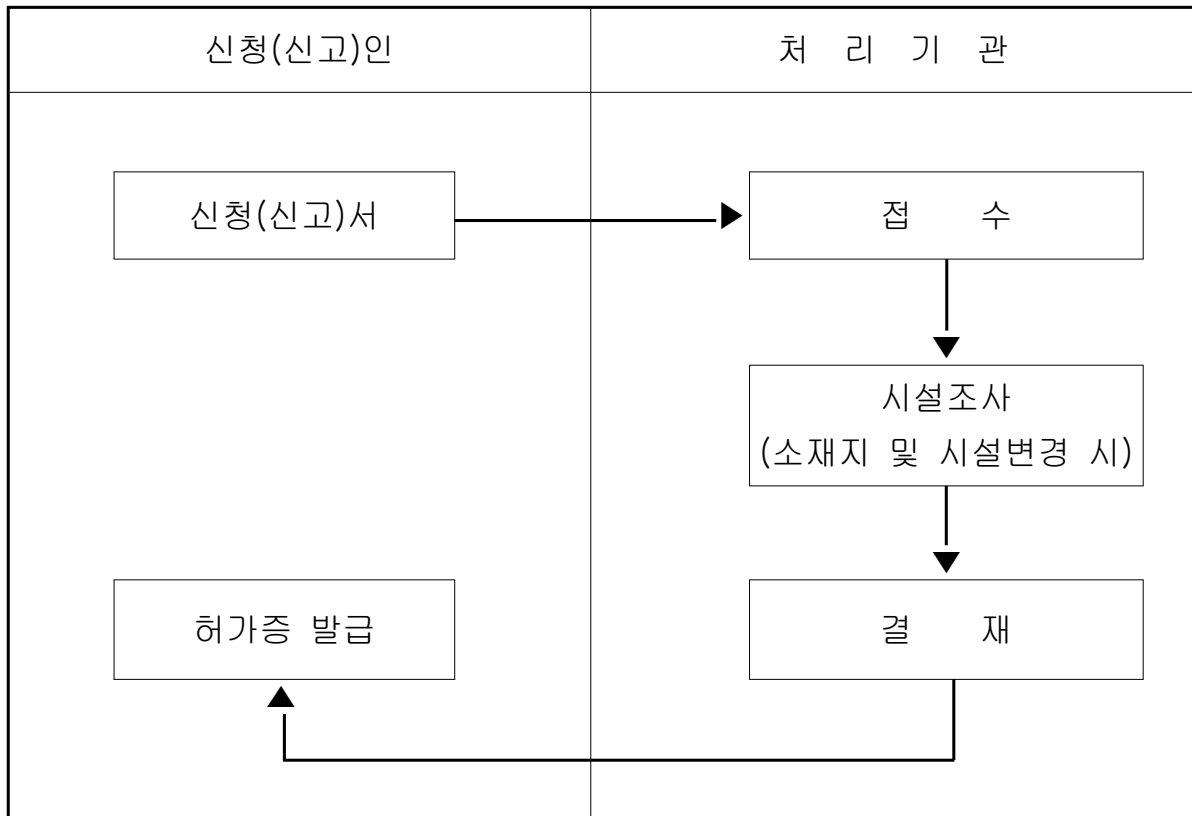


※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시 · 도 시 · 군 · 구	처리부서	축산과
허가처리기간	특 별 시		5일
	광역시 · 도		7일
	시 · 군 · 구		5일
신고처리기간	특 별 시		3일
	광역시 · 도		3일
	시 · 군 · 구		3일
유의사항	③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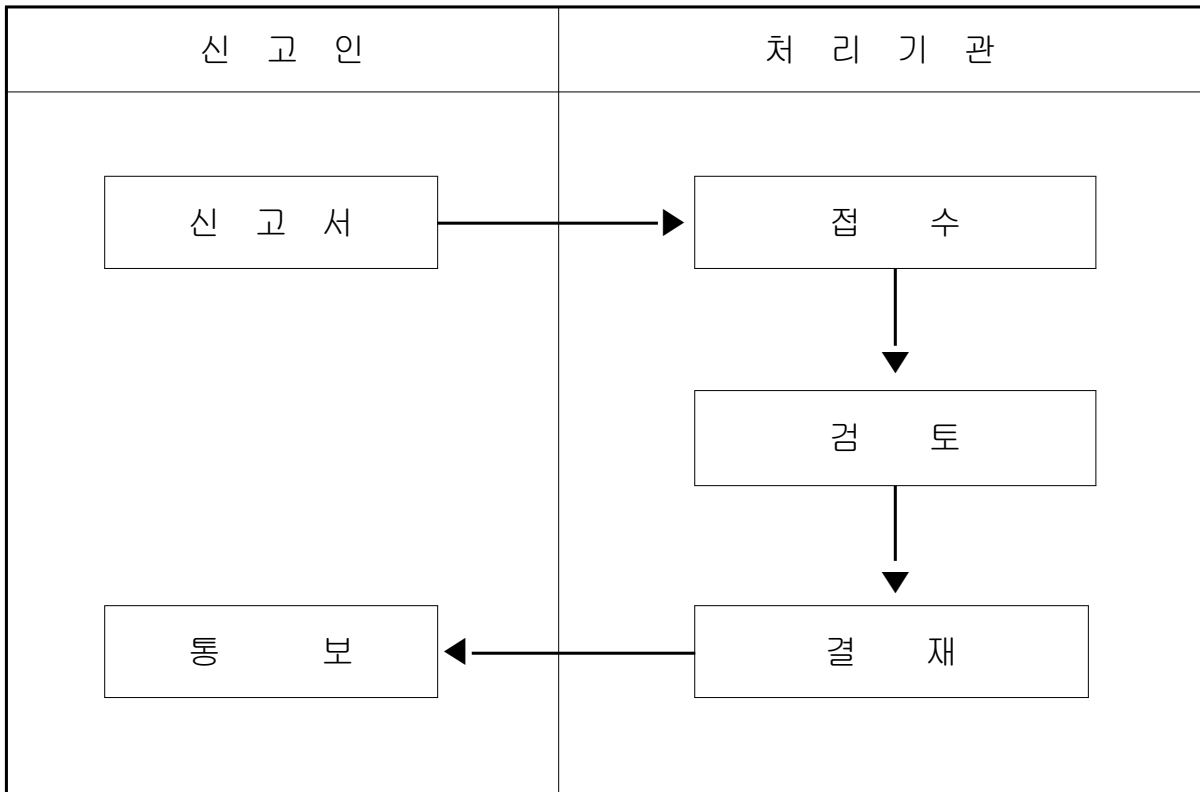


※ 신고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시·군·구	처 리 부 서	축 산 과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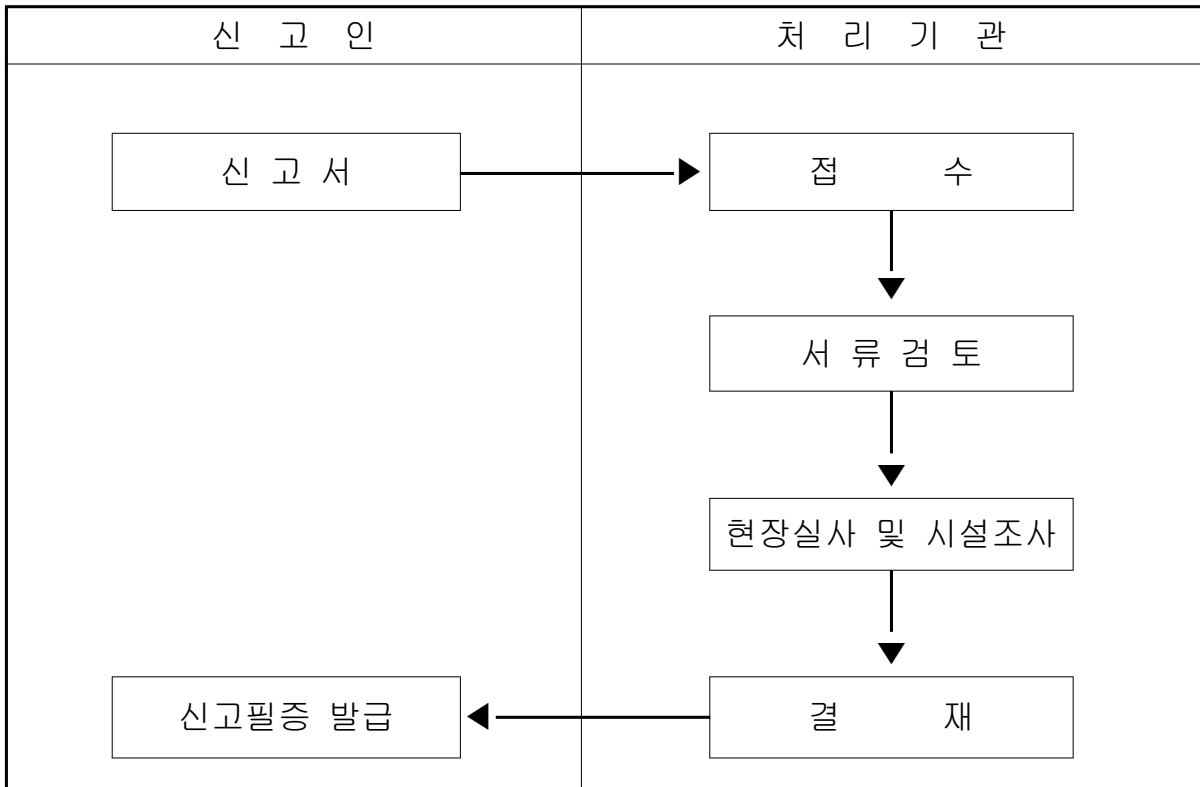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축산물운반업 <input type="checkbox"/> 축산물판매업				<b>영업신고서</b>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고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 칭 (상 호)	축산물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식육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우유류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축산물수입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전화번호: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div>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 수 료 1만원
※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공 부 확 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 성명(서명 또는 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위생교육필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출하는 곳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처리부서	축 산 과
	시·군·구	처리기간	3일
유의 사항	<p>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식육 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p> <p>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p> <p>3.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p>4.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p>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생년월일: )

영업장의 명칭(상호):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품목 등의 종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직인



### 영업신고 관리대장

							계 장	과 장	확 인				
업종		영업의 형 태		신고 번호		신 고 연월일	. . . .						
업소명	년 월 일 신규		년 월 일 변경신고(인)		년 월 일 변경신고(인)		년 월 일 변경신고(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읍·면·동 코드		산	번	지	호	특수구분	명	칭	구	획	호	수
영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월 일												
종사자	남 자	명		여 자	명		계		명				
행정 처분 사항	처 분 일	위반사항	위반코드	처분내용	처분코드	기재자 직급·성명							
	. . .												
	. . .												
	. . .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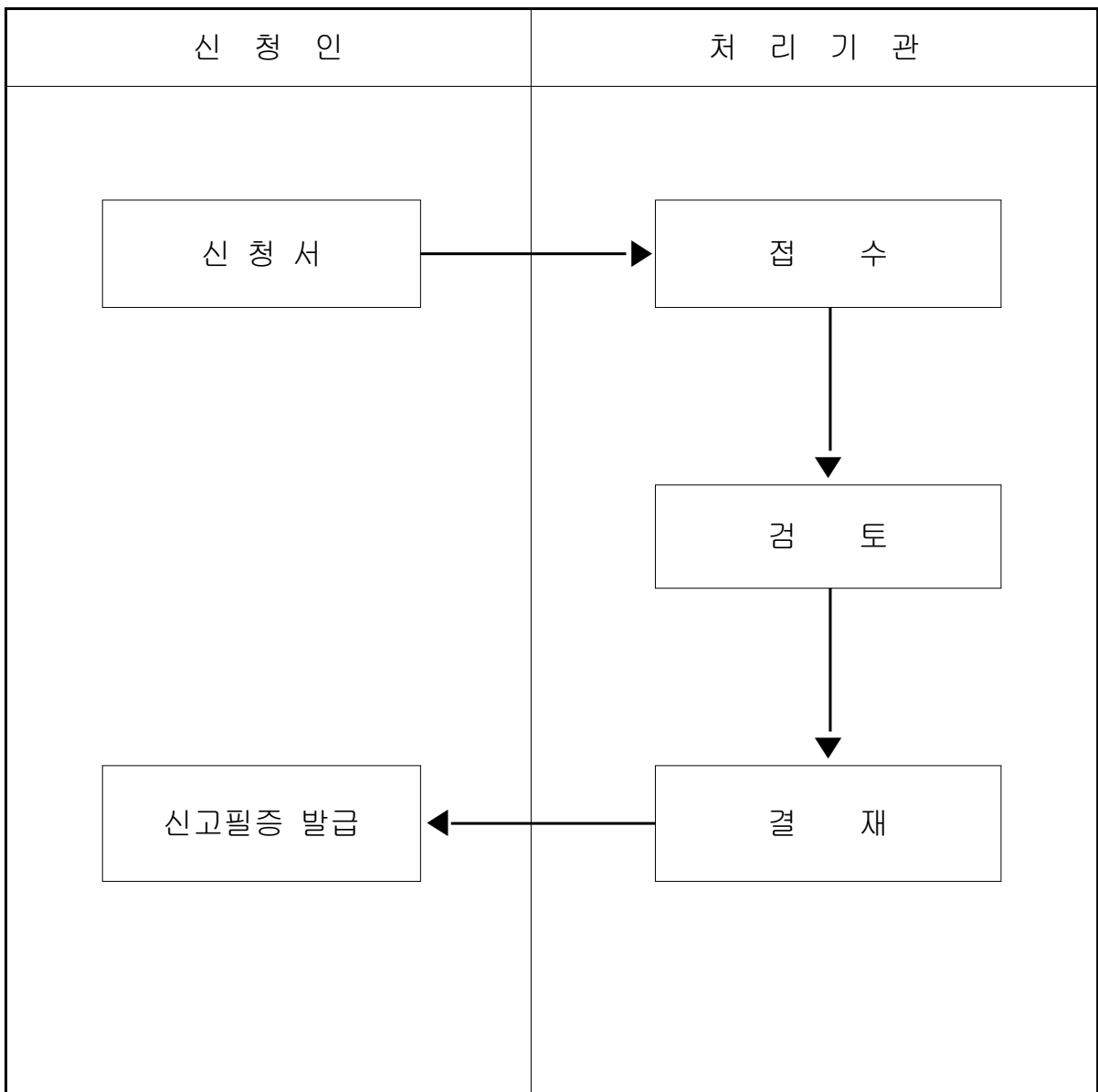






제출하는 곳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군·구	처리부서	축산과
유의사항	⑤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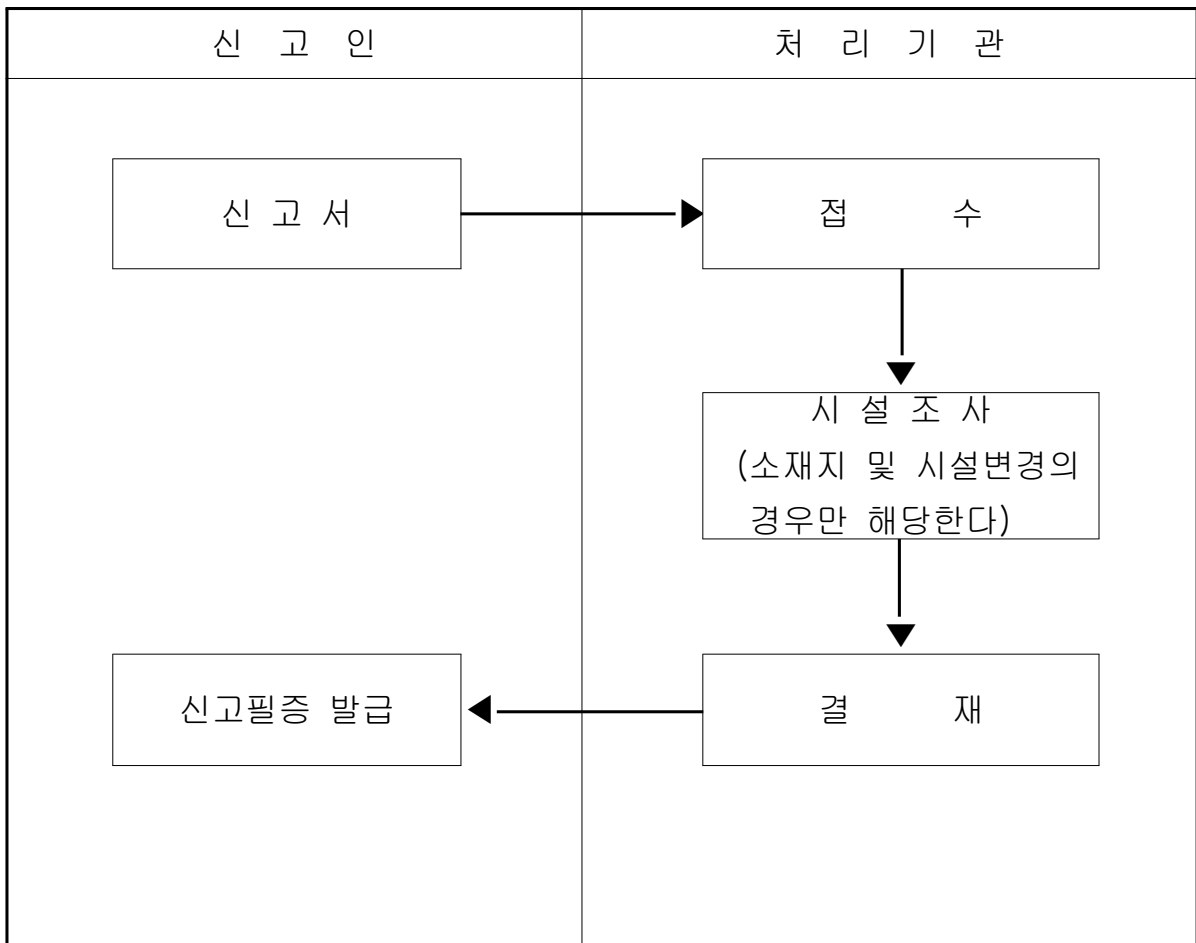


※ 신고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군·구	처리부서	축 산 과
유 의 사 항	<p>1.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p> <p>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p> <p>3. ①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p>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근거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품 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간		
	변경사유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고 자 (서명 또는 인)</p> <p>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p>			
<p>구비서류: 유통기간 설정의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 유의사항</p> <p>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1. 품목제조 보고사항

영업허가번호 제 호

품목보고번호	제 호	제품명		업소명	
품목의 유형		보고일		년 월 일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성 상		포장단위			
용 법		유통기간			
품목제조조건		기 재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 보고사항 변경보고 내용

제 품 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연월일	변경제품명	기재자 직급·성명	연월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기재자 직급·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제 품 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연월일	변경제품명	기재자 직급·성명	연월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기재자 직급·성명

3. 행정처분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b>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b>				처리기간 3일
①승계를 하는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승계를 받는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영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④승계사 유	<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수료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		1만원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업소현황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시·도 코드	시·군·구 코드	시	구	동
			도	군	면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코드				
영업허가	영업의 허가 코드		허가연월일		허가관청명
종 업 원	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 타

## 나. 축산물가공품 등 품목별 생산실적

생 산 품목코드	가공품 등의 유형	생 산 품목명	연간 생산능력 (kg,ℓ)	생 산 량 (kg,ℓ)	생 산 액 (천원)	국내 판매		국외 판매		비 고
						수량 (kg,ℓ)	금액 (천원)	수량 (kg,ℓ)	금액 (천원)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 내 문

1. 영업소명:
2. 처분 내용:
3. 처분 기간:
4. 위반 내용: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형법」 제140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 1) 규격: 30cm × 42cm

2) 색상: 바탕(황색), 테두리(적색, 폭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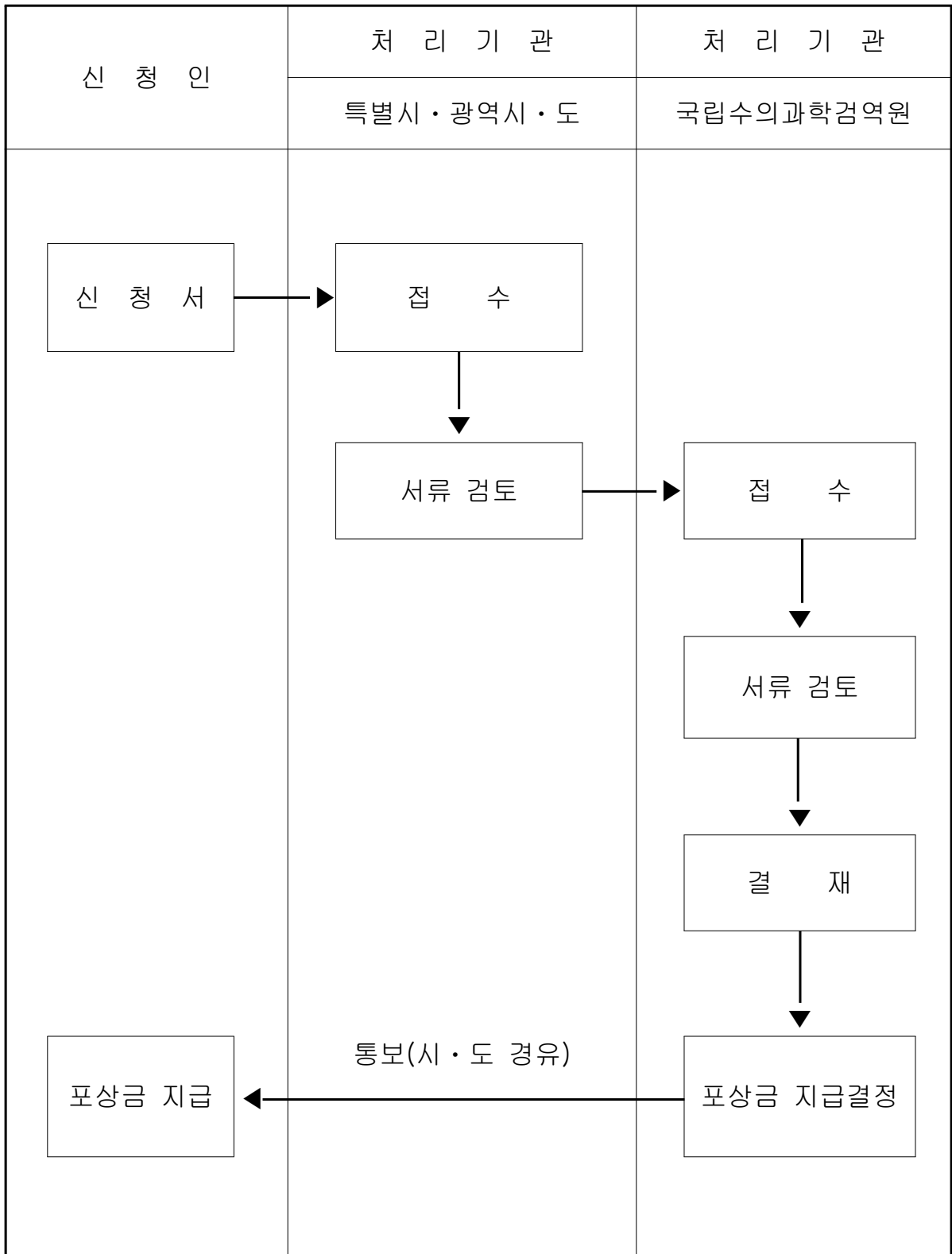


<b>포상금 지급신청서</b>			처리기간		
			시·도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범법행위유형			수량		
행위연월일			행위장소		
조치사항					
포상금액					
포상금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

거 래 연월일	식육· 포장육의 종 류	물량 (kg)	원산지 (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 식별번호)	매입처 (    )

※ 적는 요령

- 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젓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    )안에 함께 적는다.
- ② 물량(kg)은 구입한 무게를 적으며 닭·오리의 경우 마릿수(마리당 무게포함)로 적을 수 있다.
- ③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 다만,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
- ④ 부위 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다.
- ⑤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1+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적는다.
- ⑥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번호를 적는다.
- ⑦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는다.
- ⑧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 식육의 종류·물량·도축장명·원산지·매입처를 적는다.



[별지 제40호서식]

## 식 용 란 거 래 내 역 서

업소명( )

매 입 연월일	식용란의 종 류	매입처 ( )	매입수량 (개)	산란 일	판 매 연월일	판매처 ( )	판매수량 ( )	유통 기한	냉장 출하 여부	비고
(예시)					(예시)					
'10.5.10	계란	농림양계농업법인 (02- 500-1500)	5,150	'10.5.7	'10.5.11	수란직판 (031-200-2000)	3,000 (150판)	'10.5.28	X	농림0507 100개 소매
'10.5.11	"	안 전 양 계 농 장 (02-550-2500)	3,300	'10.5.8	'10.5.12	청란상회 (02-503-7200)	3,100 (170판)	'10.6.13	O	안전0508 200개 소매
	"	"	3,100	'10.5.9	'10.5.13	기린유통 (02-504-5000)	3,100 (310판)	'10.5.30	x	안전0509
'10.5.12	"	위 생 계 란 집 하 장 (02-555-2555)	6,200	'10.5.7	'10.5.14	청란상회 (02-503-7200)	2,050 (205판)	'10.5.28	X	농림0507
	"	"	2,300	'10.5.11	'10.5.15	대란직판 (041-900-1900)	6,200 (300판)	'10.5.28	X	위생0507
					'10.5.16	특란상사 (02-509-7200)	2,300 (230판)	'10.6.16	O	위생0511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적는 요령

- ① 매입연월일은 식용란을 매입한 날짜를 적으며, 판매연월일은 식용란을 판매한 날짜를 적는다.
- ② 식용란의 종류는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로 적는다.
- ③ 매입처는 해당 업소에 식용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업소의 명칭을 적고, 판매처는 해당 업소가 식용란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으며,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는다.
- ④ 매입수량과 판매수량은 식용란의 개수를 적으며, 달걀의 경우에는 판매수량 란의 ( )안에 포장개수를 함께 적는다.
- ⑤ 산란일(달걀만 해당한다)은 양계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을 집란한 날로서 거래영수증 등에 표시된 날을 적는다. 며칠간에 걸쳐 집란한 경우에는 집란한 날짜별로 구분하여 매입수량을 적어야 한다.
- ⑥ 유통기한(달걀만 해당한다)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권장유통기간 또는 영업자가 계란의 상태, 보존·유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적는다.
- ⑦ 냉장출하 여부는 식용란을 냉장상태로 출하하는지의 여부를 적는다.
- ⑧ 비고는 유통·판매한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이 어느 매입처에서 유래하였는지와 그 산란일을 알 수 있도록 적으며, 소매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적는다.